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Е)
모형 이용

2008. 12

정 재 호

서 언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1949년 정부 수립과 함께 기틀을 잡아 현재까지 약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세율 체계 변화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4년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중심관세율 구조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중심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은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으로 개별 산업 관세율 인상 혹은 인하를 통한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더 나은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원종학 박사,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저자의 자료
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노고를 한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 이현
영 주임연구행정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출판팀 직원 여러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경제발전이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곧 이은 전쟁으로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었으며, 전후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산업지향적 관세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관세율 체계도 산업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을 지향하면서 중심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지금보다 낮아진 관세율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율 체계 변화를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계산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즉,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에서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인 가격으로 표현되는 후생수준은 증가하였다. 여기서 차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란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관세율 구조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체계로 이행할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다.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 차등관세율 체계는 현재의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를 제시하였고,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만이 기존과 유사한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격의 후생 증대는 0.046%에 불과하였다. 즉, 모형에 의해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 증대는 미미하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가 변함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

안하면 오히려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하(약 86%)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상(430%)을 들 수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2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약 86% 정도 대폭 인하하여 새로운 실적세율이 0.9~1.3% 수준으로 감축되면 섬유산업이 이처럼 급격한 관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낮추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ITA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추진되었고, 향후 WTO DDA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을 WTO 양허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최적인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출한 결과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

는 0.038%로 나타났다. 현실적 제약이 추가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의 후생 증대도 적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 증대는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하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될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이 무세가 되어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유사한 관세율 수준이 유지되는 수송장비의 경우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관세율 체계 변화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 현실적 제약을 도입할 경우 국내 생산 및 수출입이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DDA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보다 중립적인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의 경제적 효과도 살펴보았다. WTO DDA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관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단일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때보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의 가계의 후생 증가가 아주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균일화하는 단일관세율 체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의 후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보다는 관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이 더 많고 관세 인하폭도 더 커서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 변화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화가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송장비 산업은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도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은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에서 서로 다

른 대체탄력성을 사용한 경우에도 무세가 제시되었고, 그 결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관세율 체계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에도 급격한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분야의 관세율을 점차 인하시키면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의 자원이 다른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관세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한 후생 증대도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겠다. 단일관세율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어 품목별로 관세율이 인하 혹은 인상되는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에 의해 WTO DDA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세율은 8%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실적세율도 기본관세율의 중심세율이 8%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WTO DDA협상 결과 전반적인 관세율이 점진적(30.2%)으로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5.58%로, 급진적(55.8%)으로 관세율이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3.53%로 낮아지게 된다. 즉, 점진적인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으로 5~6%, 보다

급진적인 관세율 인하가 합의될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세율로 3~4%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5월 말 기준으로 WTO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관세율 감축 지수(스위스 공식 계수)를 7~9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¹⁾. 이 수치대로 DDA협상이 타결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중심관세율 수준은 5%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DDA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인하에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하였던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중심관세율 수준을 5%로 낮추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세율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 재배분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균형계산 모형(CGE)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한 CGE 모형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특히, 앞서 민감도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체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CGE 모형 분석 결과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CGE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GE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관세율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중요한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1) 관세율이 30.2% 인하되는 시나리오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 공식 계수 10을 상정한 경우이고 관세 인하율이 55.8%인 경우는 스위스 공식 계수 5를 가정한 경우이다.

목 차

| | |
|----------------------------|----|
| I. 서론 | 19 |
|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 25 |
| 1. 관세율 정책의 변천 | 25 |
| 가. 산업지향적 관세정책 | 26 |
| 나. 중심관세율 체계 | 31 |
| 2. 관세수준의 변화 | 39 |
| 3. 관세의 재정 기여 축소 | 42 |
| III. 관세체계 변화의 효과분석 | 45 |
| 1. 본 연구의 CGE 모형 및 자료 | 45 |
| 가. 모형의 일반구조 및 가정 | 45 |
| 나. 모수의 설정 | 48 |
| 다. 2003년 산업구조 | 53 |
| 2. 예산제약하의 최적관세율 분석 | 59 |
| 가. 분석시나리오 설정 | 60 |
| 나. 분석 결과 | 64 |
| 3.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 80 |

| | |
|---------------------------------------|-----|
| 가. 분석 시나리오 설정 | 81 |
| 나. 분석 결과 | 83 |
| IV. 요약 및 결론 | 97 |
| 참고문헌 | 104 |
| 부록 1. 2000년 이후 관세율 조정 품목 및 관세수입 | 106 |
| 부록 2. 2003년 경제구조의 변화 및 특징 | 117 |
| 부록 3. 일반균형모형의 구조 | 129 |
| 부록 4. 일반균형모형 관련 부표들 | 139 |

표 목 차

| | |
|---|----|
| <표 II-1>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 35 |
| <표 II-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 37 |
| <표 II-3>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개정 변천 | 38 |
| <표 II-4> 단순평균 관세율 변화추이 | 40 |
| <표 II-5>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 40 |
| <표 II-6>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1998년 이후) | 42 |
| <표 III-1> 사회계정행렬 | 46 |
| <표 III-2> 2003년 사회보장부담금 및 수혜금 | 49 |
| <표 III-3> 용도별 국산재-수입재 대체탄력성 | 51 |
| <표 III-4> 전환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모수들 | 52 |
| <표 III-5> 총산출액 비중 변화 | 54 |
| <표 III-6> 수출 비중 변화 | 55 |
| <표 III-7> 수입 비중 변화 | 57 |
| <표 III-8> 수입의존도 변화 | 59 |
| <표 III-9>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3년) | 63 |
| <표 III-10>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 66 |
| <표 III-11>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 68 |

| | |
|---|----|
| <표 III-12>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 | 71 |
| <표 III-13> 시나리오별 수입 변화 | 73 |
| <표 III-14> 시나리오별 수출 변화 | 75 |
| <표 III-15>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비교 | 77 |
| <표 III-16> 대체탄력성에 따른 최적관세율 변화 | 79 |
| <표 III-17> 중심관세율 인하 효과 분석 시나리오 | 83 |
| <표 III-18> 시나리오별 관세율 수준 | 86 |
| <표 III-19> 시나리오별 관세 변화율 | 87 |
| <표 III-20>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변화율 | 89 |
| <표 III-21> 시나리오별 수입 변화율 | 91 |
| <표 III-22> 시나리오별 수출 변화율 | 93 |
| <표 III-23>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변화율(중심세율 5%) | 95 |
| <표 III-24>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변화율(중심세율 5%, 농산물 20% 인하) | 96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 41 |
| [그림 II-2] 관세수입 및 국세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 추이 | 43 |
| [그림 II-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GDP 대비 관세세수 비중 추이 | 44 |

I. 서론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기틀이 잡힌 이래로 현재까지 약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세율 체계 변화에 기반을 둔 관세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 수립 초기의 관세정책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함께 관세정책은 재정적 역할보다는 산업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관세정책이 경제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관세율의 변화는 곧 우리나라 산업구조, 더 넓게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198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동안의 산업지향적인 관세정책에서 시장중립적인 관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관세의 재정적 역할, 적극적인 산업지향적 정책에서 한 발 벗어나 점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84년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중심관세율¹⁾ 구조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중심구조로 유지

1) 관세율 체계를 구분할 때 균등관세율 체계와 차등관세율 체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차등관세율 체계는 단어 의미 그대로 품목별로 모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반면 균등관세율 체계는 품목별로 균등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중심관세율 체계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중심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와 차등관세율 사이의 개념으로 전체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일정한 중심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균등관세율 체계에 더 가까운 개념이지만 모든 품목에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대표적인 예로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중심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이어 GATT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는 WTO체제 아래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된 DDA협상에서는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 및 품목별·분야별 무세화를 논의하고 있다. DDA협상이 예정보다 합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WTO 회원국 모두가 DDA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지체되어도 언젠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히 된다. DDA협상의 타결은 곧 보다 낮은 양허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 새로운 외부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계산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였다. CGE 모형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된 행동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연립방정식 체계로 표현하고 이를 현실 경제자료들과 연계시켜 경제 여건 혹은 정책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세율 구조는 크게 차등관세율 구조와 균등관세율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는 1980년대 초까지 개별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차등관세율 체계였다. 특히 이 당시 관세율 정책은 경제발전에 우선순

위를 두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산업별로 정책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198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균등관세율 구조를 지향하면서 8% 중심관세율 구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진다면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또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산업별 경제적 변화도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이행할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다. 정부에서 개별 산업별 특징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면 개별 산업별 특징과 여건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율 구조는 자연스럽게 차등관세율 체계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유치산업(infant industry)보호를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차별적으로 관세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관세율 체계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세수입 측면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할 때 개별 품목별 탄력성에 따라 차별적인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Ramsey(1927)의 규칙(rule)을 적용하여 개별 품목별로 관세율이 다른 차등관세율 체계가 나타나게 된다.

균등관세율 체계와 차등관세율 체계에 대한 논란은 Corden(1958)이 호주의 관세율 체계에 대해 균등관세율 체계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Macario(1964), Balassa(1989), Harberger(1990) 등에 의해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 체계 개선방향으로 균등관세율 체계가 제시되었다. World Bank 또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에서도 이러한 균등관세율 체계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

그 결과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등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균등관세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균등관세율 체계를 지지하는 근거는 균등관세율 체계가 산업간 실효보호율(the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관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왜곡을 고려하거나(Johnson(1964)) 혹은 수출(입)재에 수입(출) 투입재를 사용할 경우(Corden(1971)) 균등관세율 체계는 산업간 동일한 실효보호율을 유지할 수 없음이 제시되었다. 균등관세율 체계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지지를 받는데, 단순한 관세율 체계는 행정비용을 줄이고(Gatti(1999)), 특정 산업의 로비(lobby) 혹은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편애로 인한 관세율 체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Panagariya and Rodrik(1993))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균등관세율 체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아직 논쟁 중에 있다. Ederington and Minier(2002)는 실증분석을 통해 균등관세율 체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율 분포가 균등에 매우 가깝거나 혹은 매우 차별적인 관세율 분포를 가질 때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세율 분포 정도와 경제성장률은 U자 형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어 실증분석에서도 균등관세율과 차등관세율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CGE 모형을 사용하여 최적관세율 체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을 들 수 있다. CGE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에서는 최적관세율 체계 도출 및 이에 따른 후생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부 산업의 급격한 관세율 인하 및 인상을 받아들였다²⁾. 하지만 이런 최적관세율 구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

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약을 가정하였다. 이런 현실적 제약에 따른 현실적인 적정관세율 구조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에서 분석하지 않은 균등관세율 체계 도입에 따른 후생 변화, 국내 생산 및 수출입의 변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덧붙여 현재와 같은 중심세율 구조에서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와 균등관세율 체계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에서는 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관세율 체계를 검토하였다. 2000년 자료는 1997~1998년이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막 지난 시점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2003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우리나라 경제를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CGE 모형 분석에 사용된 탄력성 모수 중 일부에 대해 기존 문헌들과 다른 수치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존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정재호·박순찬(2006)에서는 DD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TAP 자료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인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재호·박순찬(2006)에서는 구체적으로 DDA협상이 우리나라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보고서로서 우리나라 관세율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균등관세율 체계 도입과 현재

2)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은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구조에서는 일부 사업의 급격한 관세율 인하 및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런 급격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구조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는 미미함을 밝혔다.

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 아래서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심관세율 체계, 관세율 수준 및 관세의 재정적 역할을 알아본다. 제Ⅲ장에서는 일반균형계산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율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정책적인 제약 아래 가능한 최적관세율 체계를 분석하며, 이와 함께 DDA협상을 염두에 둔 균등관세율 체계와 중심관세율 체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다. 제Ⅳ장에서는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곧 이은 전쟁으로 인해 관세의 재정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그 후 경제개발 계획의 실시와 함께 재정적 역할보다는 산업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관세정책이 경제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관세율의 변화는 곧 우리나라 산업구조, 더 넓게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1984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동안 산업지향적인 관세정책에서 시장중립적인 관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관세의 재정적 역할, 적극적인 산업지향적 정책 추구에서 벗어나 점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이러한 관세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1984년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중심관세율 구조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중심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 관세율 정책의 변천³⁾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은 1984년을 큰 전환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산업별 차등관세율 정책을 지향하였고, 1984년 이후에는

3) 다음의 내용은 재무부(1989), 재무부(1991), 정재호(2003), 재경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균등관세율 정책을 바탕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는 198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가. 산업지향적 관세정책

1) 신규 제정(1949년)

1883년 한일통상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관세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관세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그 동안 사용하던 일제의 관세법규를 통합하여 전문 252조의 단일화된 관세법을 1949년 11월 12일 제정·공포함으로써 자주적인 관세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관세율 정책은 무엇보다도 건국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보에 치중하였으며, 이와 함께 산업정책적 측면도 보완적으로 고려되었다.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최저 10%부터 최고 100%까지 생활필수품 여부, 국내생산 여부, 가공도 및 용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다⁴⁾. 관세율 수준은 기본 관세율을 30%로 결정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 등의 수입 완제품에 부과하였다. 최저 관세율은 10%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긴급생필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원자재에 부과하였고, 최고세율 100%는 담배, 주류 등 기호품과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그 생산량이 매우 적은 원자재, 교육, 문화 등 공익상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최초의 관세법에 의해 세율품목으로 구분된 개수는 총 1,706개

4) 관세율은 10%, 15%, 20%, 25%, 30%, 35%, 40%, 50%, 60%, 70%, 80%, 100%로 1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27

였다. 품목 분류는 자연과학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15류, 756세번, 1,706세울 품목으로 구분하였고, 유기물(제1류~제9류), 무기물(제10류~제14류), 잡품(제15류)으로 구분하였다.

2) 195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은 전쟁에 따른 재정수요 충족을 우선시 하면서 이와 함께 국내 산업육성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 전쟁 반발로 인해 재정수요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관세 임시증징(增徵)법(1950년 12월 1일)이 시행되어 전쟁이 종료된 다음 해인 1954년 말까지 실시되었다. 관세임시증징법은 식량과 서적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관세 품목에 대해 10%의 임시관세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1949년 관세법 제정 이후 첫 번째 개정은 전쟁 이후인 1957년에 실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상승하였고, 절실한 국내산업 육성도 반영하기 위한 관세율 정책의 변화였다.

기본적으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순서로 더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여 국내가공업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중요 기간산업의 기초설비용품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재건된 산업시설에서 생산되는 국산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수입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관세율을 책정하였다.

제정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책정하였고, 긴급한 중요 수입 필수품, 국내 공급 가능성이 희박한 물품, 국가계획에 의한 수입물품, 원재료인 천연생산물 등에 대해서는 무세가 아닌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제1차 개정 이후 국내 산업기반 확대에 따른 신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세율 부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관세율 조정, 그리고 유사 물품의 관세율 균형 유지 등의 필요성에 의해 관세율 개정이 1958년 말 실시되었다.

3) 1960년대

1960년대 관세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산업정책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1950년대의 재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 관세적 성격에서 1962년 처음으로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보호관세적 성격과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당시 관세율 정책의 원칙은 국내 주요산업 및 신규산업 보호·육성, 국가의 최대 목표인 수출 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등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를 반영한 관세율 개정이 1963년(제5차 개정)에 실시되었다. 중요 산업기계, 제1차 생산품, 공업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무세 혹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반제품, 완제품의 순서로 점차 고율로 과세하며, 용도상 긴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무세 혹은 저율로 부과하고 기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고율로 과세하였다. 특히, 장래 성장이 유망하거나 수출전용산업, 기간(基幹)산업 그리고 유치(幼稚)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이들 산업에 이용되는 원자재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산업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공급만으로도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물품과 대체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치중하였다.

1961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B.T.N. 품목분류방식을 채택하였고, 1967년에는 GATT에 가입하면서 GATT의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부응하기보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29

다는 국제화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수출 지향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를 통해 무역자유화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의 관세정책이 운영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신규 산업 등장 등 국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GATT에 가입하는 등의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관세정책을 통한 수출 증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율 정책의 개편이 1967년(제6차 개정)에 실시되었다.

발전단계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과 경합하는 수입품의 관세율을 인상하였고, 국내 생산이 되는 부분품과 원자재도 그 제품과 같은 관세율로 책정하였다. 반면 공업용 원자재의 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하였다.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1차 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는 반면 생산원료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책정하였다. 한편, 무역자유화에 대비하여 급격히 증가할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의 세율은 인상하였다.

4) 1970년대

1970년대 관세정책도 계속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처럼 일방적인 산업 지향적 관세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고율관세 인하, 중간세율의 통합 정리, 다단계 세율의 축소, 가공도별 세율격차 완화 등의 정책을 통해 관세기능의 중립화, 물가상승 억제,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산업구조개선 및 산업지원에 관세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관세의 재정적

기능도 여전히 강조되어 산업정책적 또는 국제적 관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세물품을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관세부담을 통해 재정 확보를 추구하였다.

1973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실시된 관세율 개정(제8차 개정)에서는 이전의 관세율 개정과 달리 국내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관세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였다⁵⁾⁶⁾. 즉, 관세율 조정에 의한 물가 상승 및 재정적 세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 없이 산업구조 개선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관세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는 1960년대에 실시된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경우에는 과도한 단계별 관세율 차이로 인해 원료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가공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어렵게 되었다. 소비재는 고율로, 자본재 및 중간재는 저율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간 보호 정도의 격차로 인해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등 새로운 중간재 산업의 보호수준을 적정하게 채택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내생산 기반이 확립된 최종 완성재산업의 보호수준은 낮추어 국내산업의 자유화와 능률화를 추구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생필품 및 일부 중요 기자재에 한해 과도하게 높은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 지원에 초점을 두어 국산화되지 않았거나 국산품이 부족한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1976년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소비체계와의 조화, 관세협력이사회의 B.T.N. 개정에 따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재조

5) 1,068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 반면, 440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나머지 2,477개 품목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38.8%에서 31.3%로 인하되었다.

6) 관세율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잠정세율제도가 채택되었다. 또한 관세감면제도도 물가 안정을 위해 그대로 존치하였다.

정,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철강, 조선업 등을 지원하는 관세율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1978년에 새로운 품목분류방식인 CCCN이 발효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관세율이 개편이 이루어졌다. 고율관세율 인하를 통한 물가 안정, 중화학공업분야 지원,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관세 재정부담 확립 등 1970년대의 관세율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5) 1980년대 초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민간주도형 개방경제체제가 강조되면서 관세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1981년 말에 이루어진 제11차 관세율 개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관세율 단계를 14단계에서 11단계로 축소하였다. 또한 보호관세율 수준을 조정하여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관세율 인하를 실시하였다⁷⁾. 그러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1982년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산업지원 및 필요 재정의 확보가 여전히 관세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신규 개발된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상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도 유지하였다. 또한 수출 산업, 반도체산업 등에 대해서는 관세정책을 통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관세의 재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종량세액을 현실화하거나 증가세로의 전환도 이 당시에 이루어졌다.

나. 중심관세율 체계

198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기본적으로 차등관세율 체계였다. 차등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와 대비되는 개

7) 150%는 100%, 80%는 50%, 60%는 50%로 인하.

념으로 개별 품목별로 차별적인 관세율이 적용된다. 즉, 관세를 통한 재정확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5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지원적인 차등관세율체계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수입대체사업 육성을 위한 완제품에 대한 높은 보호관세와 중화학공업 등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정책은 결과적으로 원료, 중간재, 완제품 사이의 과도한 관세율 격차를 발생시켜 원료 및 중간재의 국산화 개발 의욕을 낮추고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 조립·가공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민간 주도적인 경제체제가 강조되면서 관세를 통한 산업 지원적 정책보다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인 기능이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1984년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되었다.

1)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균등관세율 체계는 관세의 산업 중립적 기능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하여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자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산업 차별적인 관세율 정책을 일시에 단일세율인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중심관세율을 설정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중심관세율이 적용되도록 관세율 개편을 실시하였다. 한편, 관세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향후의 관세율 인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기본구조가 된 균등관세율 체계는

1984년에 시작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의해 형성되었다⁸⁾.

1984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종료된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기본적으로 20% 균등관세율을 중간재 및 소비재에 적용하고 기초원료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산업에 투입되어 중간재로 사용되는 품목과 소비재의 관세율은 20%로 인하하였다. 다만, 국산재의 경쟁력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 속도를 다르게 하였다. 사치성 소비재는 예외적으로 30%를 적용하였다. 그동안 40~80%에 이르던 소비재의 관세율을 과잉보호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로 대폭 낮춘 것이다. 기초원료에 관한 관세율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보다 낮게 5~10%로 인하하였다. 기존의 기초원료에 관한 관세율은 최고 30%에 육박했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구분하여 기본식량, 사료, 공업용 원료 곡물은 기초원료와 동일한 5~1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농가소득원인 품목은 50%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세율정책의 결과 원료, 중간재, 소비재 사이의 관세율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고, 산업별 관세율 격차도 크게 줄어들어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종료되는 1988년 당시 우리나라의 중심세율은 20%인데 비해 일본, 미국, EC 등은 3~8%, 경쟁국인 대만은 5~15%의 중심세율을 두고 있었다.

8)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84년에 시작하여 1988년에 종료되었고,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89년에 시작하여 1994년에 종료되었다.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9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990년도 방위세 폐지에 따라 인하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여 1994년에 종료되었다.

2)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은 여전히 높았으며, 또한 일부 소비재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부분적으로 산업간, 품목간 실효보호율의 격차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 정책이 필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9년부터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시행되었다.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88년 당시 20%인 중심관세율을 1989년 15%로 인하하는 등 그 수준을 점차 인하하여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가 종료되는 1994년에는 8%의 중심세율 적용을 목표로 실행되었다. 다만, 원료, 중간재, 완제품을 구분하여 관세율에 차이를 두고 다시 국산재와 수입 재간의 경쟁 여부와 국산재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수준 혹은 인하속도를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재, 완제품 구분 없이 8%의 중심관세율을 적용하되, 경쟁력 확립 여부, 국산화 여부, 국내 생산규모 등에 따라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였다⁹⁾. 특히, 세율이 30%인 일부 사치품에 대해서도 8%의 중심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기초원료는 제1차 관세율 인하예시제 때와 마찬가지로 중심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비경쟁 품목은 1~2%의 관세율을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3%의 관세율을 설정하였다.

일부 중간재 중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중심관세율 8%보다 낮

9) 재무부(1991)에 의하면 중심세율을 8%로 결정한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증가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요구가 발생하여 당시 OECD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수준인 8%를 우리나라도 지향하였다. 둘째, 1998년 우리나라 공산품의 평균 국내외 가격차가 13%로 지난 5년 동안 40% 인하되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8%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KDI에서도 관세의 재정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이 8%라고 제시하였다.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35

은 5%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1차 가공품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초원료를 단순 가공하여 다른 물품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중간재와 구분하여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0년에 걸쳐 시행된 2차례의 관세율 인하예시제로 기초원료 관세율 1~3%, 그리고 완제품 관세율 8%의 관세율 체제가 1994년에 완료되었다.

<표 II-1> 제2차 관세율 구조 개편원칙

(단위: %)

| | | 1988 | 1989 | 1990/91 | 1992 | 1993 | 1994 |
|----------|-----------------------|---------|------|---------|------|------|------|
| 원료 | 비경쟁원료 | 5 | 1~2 | 1~2 | 1~2 | 1~2 | 1~2 |
| | 경쟁원료 | 10 | 5 | 5 | 5 | 4 | 3 |
| 중간재 및 | 중심세율(일반 공산품) | 20 | 15 | 13 | 11 | 9 | 8 |
| | 경쟁력 확립 및 국산화 곤란 품목 | 10~20 | 10 | 10 | 10 | 9 | 8 |
| 완제품 | (1차 가공품) | (10~20) | (10) | (10) | (9) | (7) | (5) |
| | 사치성 소비재 | 30~50 | 20 | 16 | 13 | 10 | 8 |

주: 제2차 관세율 인하예시제는 199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1990년도 방위세 폐지에 따라 인하예시제를 1년씩 순연하여 1994년에 종료됨.

자료: 정재호(2003)

3) 1997년 및 2000년 관세율 개정

그동안 관세율 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과 2000년에 관세율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7년 관세율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일부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둘째, 섬유·신발 등의 관세율을 부분 인상하였다.

에너지·원료를 제외한 일부 원자재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관세율 인하는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섬유류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섬유류의 관세율이 낮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된 품목의 관세율도 기본관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8% 적용품목은 5%로, 5% 적용품목은 3%로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가공식품과 수산물, 화학, 철강·금속, 기계·전자 그리고 고무와 목제품 등 182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섬유류 등은 경쟁국 관세율과 양허세율에 따라 10%, 13%, 16%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섬유·의복과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2000년에 이루어진 관세율 개편에서는 먼저 일부 농산물에 대해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하였고, 역관세 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재에 대한 세율 인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로 대량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당근과 버섯, 파, 고사리, 들깨 등 7개 채소 가공품에 대하여 종가·종량 선택세를 적용하였다. 선택세 적용으로 일정 수준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여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가공식품에 발생하는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해 토마토, 대두유, 아몬드 등의 관세율을 20~50%에서 5~10%로 인하하였다. 또한 ITA협정에 따라 무세화되는 제품의 부분품이나 원료로서 폴리 실리콘, 흑연도 가니 등의 관세율을 8%에서 3~5%로 인하하여 역관세의 부담을 덜었다. 이 밖에 생사와 재생섬유와 같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 유사물품간 세율 균형이 결핍되었거나 역진적인 품목의 세율이 조정되었다.

1984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관세율 인하예시제와 1997년에 이루어진 섬유 관련 관세율 구조 개편으로 우리나라 공산품 관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표 II-2> 공산품의 관세율 구조

(단위: %)

| 가 공 도 별 | | 1983 | 1984 | 1988 | 1989 | 1994 | 2000 |
|---------|--------------|-------|-------|-------|------|------|-------|
| 중 심 세 율 | | 20 | 20 | 20 | 15 | 8 | 8 |
| 원 료 | 비경쟁원료 | 5~30 | 5~10 | 5 | 1~2 | 1~2 | 1~2 |
| | 경쟁원료 | | 10 | 10 | 5 | 3 | 3~4 |
| 중간재 | 경쟁력확립(1차가공품) | 20~50 | 20~30 | 10~20 | 10 | 8(5) | 5~8 |
| 완제품 | 일반 공산품 | 40~80 | 40~50 | 20~30 | 15 | 8 | 8 |
| | 경쟁력 취약 | | | | | | 10~16 |

자료: 정재호(2003).

4) 2006년 관세율 개정

2006년 관세율 개편은 2000년 이후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0년 이후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하였고, 새롭게 FTA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UR협정과 IT협정 등의 결과로 일부 품목이 무세화됨에 따라 품목간 세율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DDA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율 개편보다는 그동안 기본관세율 체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바탕에서 우선 기초원자재 등 308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UR협정과 IT협정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을 무세화함에 따라 발생한 품목간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간재 등 1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를 위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된 품목 및 잠정관세 품목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전환하였고, 일부 농수산물의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명목적 고관세율 구조도 현실화하였

다. 모두 40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WCO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적용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체계 등을 정비하였다.

<표 II-3>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개정 변천

| 관세율 개정 | 일시 | 비고 |
|-------------|---------------|---|
| 신규제정 | 1949년 11월 12일 | - 전문 252조 - 15류, 756 세번, 1,706개 세율품목 |
| 관세입시증정법 실시 | 1950년 12월 1일 | - 전쟁으로 재정수입확보 위한 임시관세부과 - 1954년 12월말 폐지 |
| 제1차 개정 | 1957년 1월 1일 | - 재정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 강조 - 세율품목 1,229개로 대폭 축소 |
| 제2차 개정 | 1958년 12월 29일 | - 산업변화에 따른 보호관세율 조정 |
| 제3차 개정 | 1961년 4월 10일 | - 산업변화에 따른 보호관세율 조정 |
| 제4차 개정 | 1961년 12월 30일 | - 품목분류 CCC의 B.T.N.방식 채택 |
| 제5차 개정 | 1963년 12월 5일 | -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
| 제6차 개정 | 1967년 11월 29일 | - 제2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
| 제7차 개정 | 1968년 12월 31일 | - 원모류(HSK 5301~5305) 관세율 인상 |
| 제8차 개정 | 1973년 3월 5일 | - 제3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
| 제9차 개정 | 1976년 12월 12일 | - 제4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
| 제10차 개정 | 1978년 12월 5일 | - 품목분류방식 CCCN 채택 |
| 제11차 개정 | 1981년 12월 31일 | - 제5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
| 제1차 관세인하예시제 | 1984년~1988년 | - 중심관세율 20%, 원료 5~10% |
|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 | 1989년~1994년 | - 중심관세율 8%, 원료 1~3% |
| 1997년 개정 | 1997년 12월 13일 | - 섬유, 신발 등의 관세율 인상 |
| 2000년 개정 | 2000년 12월 29일 | - 세율불균형품목의 관세율 인하 조정 |
| 2006년 개정 | 2006년 12월 30일 | -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 WCO HS협약 개정(HS 2007) 적용 |

2. 관세 수준의 변화

관세율 정책의 변화는 곧 바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 및 관세율 분포의 변화를 가져왔다. 1949년 기본세율 30%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1960년대 중반 단순평균 관세율이 39%였고, 물가 안정을 함께 고려한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1970년대 중반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31%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세율 조정을 통해 관세 인하예시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1983년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23.7%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예시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제2차 관세 인하예시제가 시작된 1989년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12.7%로 인하되었고, 관세 인하예시제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8.6%로 낮아졌다. 관세 인하예시제 이후 전면적인 관세율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⁰⁾.

관세 인하예시제가 실시되면서 중심세율을 중심으로 관세율이 분포하게 되었다. 제1차 관세 인하예시제에서 제시한 20% 중심세율에 의해 1984년 41.9%의 품목에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고, 1989년에는 그 비중이 증가하여 61.8%의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다.

1994년 이후 제2차 관세 인하예시제를 거치면서부터는 중심관세율이 8%로 낮아졌다. 1994년 8% 중심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은 60%였다.

10) 2007년 기본관세율이 단순평균은 8.5%이다. 관세를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인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은 2006년 기준 3.31%로 2007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II-4> 단순평균 관세율 변화추이

(단위: %)

| | 1983 | 제1차 관세 인하 예시제 | | 제2차 관세 인하 예시제 | | | | | 1997 | 2000 |
|-------|------|------------------|------|---------------|---------|------|------|------|------|------|
| | | 1984 | 1988 | 1989 | 1990/91 | 1992 | 1993 | 1994 | | |
| 평균관세율 | 23.7 | 21.9 | 18.1 | 12.7 | 11.4 | 10.1 | 8.9 | 7.9 | 8.6 | 8.6 |
| 농 산 품 | 31.4 | 29.6 | 25.2 | 20.6 | 19.9 | 18.5 | 17.8 | 16.6 | 18.7 | 18.6 |
| 공 산 품 | 22.6 | 20.6 | 16.9 | 11.2 | 9.7 | 8.4 | 7.1 | 6.2 | 6.3 | 6.4 |
| 원 자 재 | 11.9 | 10.6 | 9.5 | 3.9 | 3.9 | 3.3 | 3.2 | 2.8 | 2.6 | 2.5 |
| 중 간 재 | 21.5 | 18.7 | 17.1 | 11.7 | 10.7 | 9.3 | 7.8 | 7.0 | 6.9 | 6.8 |
| 최 종 재 | 26.4 | 24.7 | 18.9 | 13.3 | 11.2 | 9.4 | 7.9 | 7.1 | 6.8 | 7.0 |

자료 : 정재호(2003).

<표 II-5>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4년 이전)

(단위: %)

| | | | | | | | | | | | | | | |
|------|-----|-----|------|------|------|------|-----|-----|------|------|------|-----|-----|-----|
| 1983 | 세율별 | 0 | 5 | 10 | 15 | 20 | 25 | 30 | 40 | 50 | 100 | 총량 | | |
| | 구성비 | 6.8 | 3.5 | 10.8 | 11.2 | 29.6 | 3.3 | 1.4 | 8.7 | 10.6 | 0.39 | 0.5 | | |
| 1984 | 세율별 | 0 | 5 | 10 | 15 | 20 | 25 | 30 | 40 | 50 | 80 | 90 | 100 | 총량 |
| | 구성비 | 3.7 | 5.9 | 14.6 | 5.1 | 41.9 | 0.3 | 4.5 | 13.2 | 2.4 | 0.1 | 0.5 | 0.4 | 0.4 |
| 1988 | 세율별 | 0 | 5 | 10 | 15 | 20 | 30 | 50 | 100 | 총량 | | | | |
| | 구성비 | 3.6 | 5.6 | 16.6 | 3.9 | 61.8 | 4.7 | 3.0 | 0.4 | 0.5 | | | | |
| 1994 | 세율별 | 0 | 1~3 | 5 | 8 | 10 | 20 | 30 | 40 | 50 | 총량 | | | |
| | 구성비 | 5.5 | 15.6 | 11.5 | 60.0 | 0.3 | 1.4 | 2.8 | 0.9 | 1.4 | 0.7 | | | |

자료: 박상태(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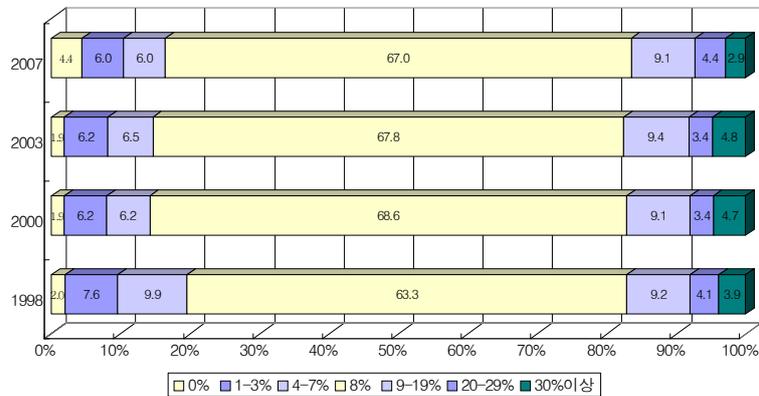
II. 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41

관세 인하예시제가 종료된 이후 1998년 8%의 중심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된 품목의 비중은 63.3%이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약 68%, 2007년에는 67% 수준을 보이고 있다¹¹⁾. 결과적으로 관세 인하예시제를 통한 8% 중심세율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이루어진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세율 인하로 기본관세 무세(0%)가 적용되는 품목은 4.4%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비중은 2003년 4.8%에서 2.9%로 낮아졌다. 30% 이상 품목의 관세율이 낮아지면, 20%대의 관세율을 갖는 품목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림 II-1]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비(1998년 이후)

(단위:%)



11) 매년 품목 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구성비도 변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7년에는 8% 적용 품목수가 7,791개로 2004년의 7,601개보다 190개 품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수가 더 증가하여 전체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기본관세율의 세율별 구성(1998년 이후)

(단위: 개, %)

| 구간 | 1998 | | 2000 | | 2003 | | 2007 | |
|-------|-------|------|-------|------|-------|------|-------|------|
|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품목수 | 비중 |
| 0 | 227 | 2.0 | 207 | 1.9 | 217 | 1.9 | 517 | 4.4 |
| 1~4 | 850 | 7.6 | 691 | 6.2 | 694 | 6.2 | 701 | 6.0 |
| 5~7 | 1,104 | 9.9 | 687 | 6.2 | 732 | 6.5 | 698 | 6.0 |
| 8 | 7,069 | 63.3 | 7,647 | 68.6 | 7,601 | 67.8 | 7,791 | 67.0 |
| 9~12 | 430 | 3.8 | 484 | 4.3 | 519 | 4.6 | 503 | 4.3 |
| 13~19 | 599 | 5.4 | 532 | 4.8 | 534 | 4.8 | 559 | 4.8 |
| 20~29 | 453 | 4.1 | 380 | 3.4 | 385 | 3.4 | 514 | 4.4 |
| 30~39 | 173 | 1.5 | 334 | 3.0 | 338 | 3.0 | 193 | 1.7 |
| 40~49 | 77 | 0.7 | 69 | 0.6 | 69 | 0.6 | 90 | 0.8 |
| 50 이상 | 190 | 1.7 | 118 | 1.1 | 129 | 1.1 | 58 | 0.5 |

주: 1. 종량세 적용품목을 제외한 중가세 품목들만을 대상으로 계산.

2. 기본관세율이 2008년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과 2008년의 구성비는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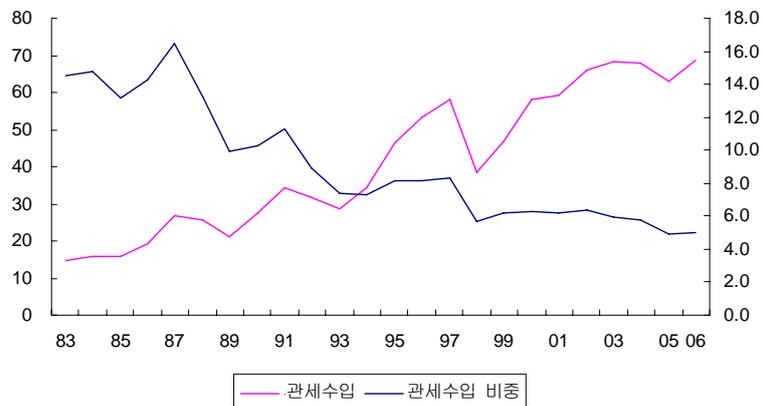
3. 관세의 재정 기여 축소

관세의 재정적 기능은 여러 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50~70년대 우리나라 관세세수는 국가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현상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국세 과세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관세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발전과 함께 내국세 과세기반이 충실해지면서 또한 관세로 인한 자원 배분상의 비효율성이 부각되면서 관세수입의 비중도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관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1980년대 약 15% 수준에서 1990년대 말부터 약 5~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향후에도 WTO 관세 인하협상과 FTA 체결 등으로 관세의 재정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림 II-4] 관세수입 및 국세수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세수의 기능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관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GDP 대비 관세세수 비중은 1970년 평균 1%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 후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부터 0.5% 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0.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1970년대 초 1% 수준에서 30~40년에 걸쳐서 현재 수준인 0.2%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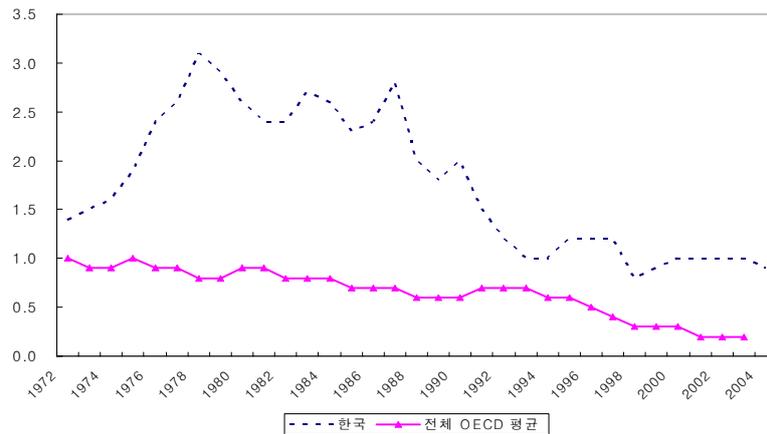
경제발전이 빨랐던 미국은 관세세수 비중이 1960년부터 현재까지 약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1970년 초에 이미

GDP의 약 0.5% 수준이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약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나,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 관세세수 비중이 3%에 육박하여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그 후 1980년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 1% 내외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I-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GDP 대비 관세세수 비중 추이

(단위:%)



Ⅲ. 관세체계 변화의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차등관세율 구조와 단일관세율 구조조정에 따른 후생 변화 등의 정책적 효과와 중심관세율 수준을 조정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다.

CGE 모형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생산물 및 생산요소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로부터 명시적으로 도출하고, 그 시장들 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은 경제주체들과 산업간 상호관계를 구체적인 수식으로 기술하여 외부조건의 변화가 경제적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여 준다. CGE 모형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조세와 무역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경제 내 전 산업의 생산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관세체계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적절한 모형이다.

1. 본 연구의 CGE 모형 및 자료

가. 모형의 일반구조 및 가정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일반균형 모형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CGE 모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¹²⁾.

CGE 모형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시장과 주어진 제도 안에서 상호 경제적 행위를 주고받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CGE 모형의 기본적 구조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은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한 경제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 사회계정행렬

| | 재화 | 생산활동 | 생산요소 | 가계 | 정부 | 투자 | 해외 |
|------|------|-----------|------|------|------|------|-------|
| 재화 | | 산업별 공급 | | | | | |
| 생산활동 | 중간투입 | | | 가계소비 | 정부소비 | 투자지출 | 수출 |
| 생산요소 | 요소비용 | | | | | | |
| 가계 | | | 요소소득 | | 이전지출 | | |
| 정부 | 간접세 | 관세 | 요소과세 | 직접세 | | | |
| 투자 | | | 감가상각 | 가계저축 | 정부저축 | | 자본유출입 |
| 해외 | | 수입 | | | | | |

본 모형에서 경제주체는 기업(생산부문), 가계, 정부가 있다. 생산부문은 28개 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상품별 총공급은 국내 생산부문으로부터의 생산과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총수요는 기업의 중간투입, 가계와 정부의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로 구성된다. 가계의 저축, 기업의 감가상각, 정부의 저축, 해외로부터의 자

12)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 제시한 모형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 제시한 내용을 부록에 그대로 인용하였다.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47

본순유입액이 합해져서 경제 전체의 투자기금이 마련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이윤 최대화의 원리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산출물을 구입하여 중간투입으로 사용하고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구매하여 본원투입으로 사용한다. 기업은 이러한 중간투입과 본원투입을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를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판매(수출)한다. 또한 국내시장 판매액 중 일정비율을 정부에 간접세로 납부한다. 기업이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한 총지불액은 가계의 요소소득(임금 및 자본임대료), 요소에 대한 정부의 과세, 그리고 감가상각액으로 나누어진다.

가계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소유하고 이것을 요소시장에 판매하여 임금과 자본임대료 따위의 요소소득을 얻는다. 가계는 정부에 직접세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는 이전지출 및 사회보장 수혜금을 받는다. 요소소득과 정부로부터의 순이전(이전지출 - 직접세)을 합한 것이 가처분소득이 되며,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을 저축에 지출하고 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효용 최대화를 위해 가계소비로 사용한다.

정부는 요소시장에서 가계의 소득에 대해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자본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하고, 기업의 국내시장 재화 판매에 대해 간접세를,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물품세를 징수한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입을 정부소비,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 정부저축으로 지출한다.

해외 부분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출재를 구매하거나 수입재를 판매한다. 수출재를 구입함으로써 외환을 공급하고 수입재를 국내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외환을 수요한다. 또한 수입재 판매에 대해 정부에 관세를 지불한다. 이러한 수출입에 의한 무역수지의 차액만큼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형 소국경제를 가정한다. 이 가정에 의해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즉, 수출재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함수와 수입재에 대한 세계시장의 공급함수는 수평임을 가정한다.

한편 수출재와 내수재, 그리고 수입재와 국산재 간의 불완전 대체 가능성을 가정한다. 즉, 아밍턴 가설을 상정한다. 현실적으로 일반균형 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산업분류체계에서는 동일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수입재-국산재 사이, 그리고 내수재-수출재 사이의 불완전 대체탄력성이 가정된다.

나. 모수의 설정

CGE 모형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경제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에 포함된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들의 모수들을 적절히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 경제주체의 행태를 규정하는 모수 중에서 모형에 필요한 모수로는 세율, 생산함수의 중간투입계수 등의 비율모수와 그리고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의 대체탄력성, 수출재와 내수재의 전환탄력성,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 등의 탄력성모수가 있다.

1) 비율모수

이 중 비율모수들은 산업연관표,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 통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사회계정 행렬 중 가계, 기업, 정부의 산업별 소비 및 생산수준, 중간재 투입규모, 생산요소별 소득 등의 자료는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2003년 산업연관표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여 세율, 중간재의 투입산출 계수 등의 비율모수를 구할 수 있다¹³⁾.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49

산업연관표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이전소득¹⁴⁾에 대해서는 조세개요, 예산개요, 각종 사회보장제도¹⁵⁾ 관련 연보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자본유출, 가계의 저축액, 정부의 저축액은 해당계정의 수입과 지출이 동등하다는 항등식으로부터 계산된다.

<표 III-2> 2003년 사회보장부담금 및 수혜금

(단위: 억원)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계 |
|------|---------|---------|--------|--------|--------|-------|---------|
| 부담금액 | 153,258 | 137,409 | 25,936 | 35,466 | 18,406 | 8,948 | 379,423 |
| 수혜금액 | 23,284 | 150,278 | 10,744 | 24,818 | 36,826 | 6,026 | 251,976 |

- 주: 1. 건강보험 수혜금은 현물급여(149,181억원)와 현금급여(1,096억원)임.
- 2. 고용보험 수혜금은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실업급여(10,303억원)와 모성보호급여(441억원)임.
- 3. 공무원연금의 부담금은 연금부담금에 한하며, 수혜금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임.

2) 탄력성모수

한편 외부조건의 변화에 경제주체들이 반응하는 정도를 규정하는 탄력성모수들에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노동-자본의 대체탄력성, 수출재와 내수재의 전환탄력성,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노동-자본 대체탄력성은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변화에 기업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며, 수출재와 내수재의 전환

13) 간접세 총액과 세율, 관세 및 수입상품의 세수입 및 실적세율, 가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의 총액 및 비중 등의 자세한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4) 이전소득은 사회보장수혜금과 사회복지 서비스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하여 노인복지급여, 보육 등 개별 가구에 지급된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1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탄력성은 기업이 내수재와 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들 탄력성모수는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 추정한 탄력성모수를 사용하였다. 그 동안 생산기술과 관련된 탄력성들이 대부분의 국내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외국연구에서 이용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탄력성모수를 사용할 경우 국내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지만 국내 연구 부족으로 인한 차선의 선택이었다¹⁶⁾.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국산재와 수입재의 상대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은 문석웅(1999)에서 제시한 국내산업별 용도별 추정치를 가중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문석웅(1999)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국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지출액수로 가중평균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다만,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분류의 변화에 따라 문석웅(1999)에서 기타 제조업에 포함되었던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이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의 대체탄력성은 기타제조업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문석웅(1999)에서는 정밀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간투입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적 특징에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석웅(1999)에 앞서 이루어진 신동천(1996)에서는 정밀기계의 대체탄력성을 3.100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1차 철강제품의 대

16)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도 28개 산업부문 중 광산품, 수송장비,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유효한 추정치를 구하지 못했다. 이들 부문의 탄력성 모수는 이명현·성명재(2001)에서 사용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51

체탄력성을 0.740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정밀 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결정하였다¹⁷⁾.

마지막으로 문석웅(1999)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대체탄력성은 추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헌·성명재(2001)에서 사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표 III-3> 용도별 국산재-수입재 대체탄력성

(단위: %)

| 산업 | 중간재 | 자본재 | 소비재 |
|-------------|-----------|----------|------|
| 농림수산물 | 0.5 | 0.05 | 0.1 |
| 광산물 | 0.05 | | 0.01 |
| 음식료품 | 0.6 | | 0.1 |
| 섬유 및 가죽제품 | 3.5 | 10.5 | 2.5 |
| 목재 및 종이제품 | 0.05 | 0.05 | 0.05 |
| 인쇄, 출판 및 복제 | 4.5 | 10.5 | 8.75 |
| 석유 및 석탄제품 | 1.3 | | 0.1 |
| 화학제품 | 0.5 | | 0.65 |
| 비금속광물제품 | 0.5 | | 0.1 |
| 제1차 금속제품 | 0.7(1.25) | | 0.01 |
| 금속제품 | 0.5 | 6.5 | 3.0 |
| 일반기계 | 0.65 | 0.55 | 9.75 |
| 전기 및 전자기기 | 0.1 | 0.125 | 0.1 |
| 정밀기기 | 0.1(0.5) | 0.4(2.0) | 0.6 |
| 수송장비 | 0.45 | 3.0 | 6.25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4.5 | 10.5 | 8.75 |

주: 1. 신동천(1996)에서 정밀기계의 대체탄력성을 3.100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신동천(1996)에서 제1차 철강제품의 대체탄력성을 0.740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문석웅(1999)

17) 문석웅(1999)에서 제시한 정밀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의 또 다른 대체탄력성 수치와 이명헌·성명재(2001)에서 이용되었던 문석웅(1998)의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다음 절에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4> 전환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모수들

(단위: %)

| 산업 | 내수재-수출재 전환탄력성 | 노동-자본 대체탄력성 | 국산재-수입재 대체탄력성 |
|-------------|------------------|----------------|------------------|
| 농림수산물 | 0.729 | 0.172 | 0.37 |
| 광산물 | 2.950 | 1.550 | 0.05 |
| 음식료품 | 0.189 | 0.053 | 0.31 |
| 섬유 및 가죽제품 | 0.796 | 0.157 | 3.25 |
| 목재 및 종이제품 | 1.359 | 0.074 | 0.05 |
| 인쇄, 출판 및 복제 | 1.579 | 0.015 | 5.51 |
| 석유 및 석탄제품 | 0.000 | 0.263 | 1.05 |
| 화학제품 | 0.310 | 0.095 | 0.51 |
| 비금속광물제품 | 3.085 | 0.037 | 0.49 |
| 제1차 금속제품 | 0.330 | 0.177 | 0.71 |
| 금속제품 | 2.539 | 0.229 | 0.72 |
| 일반기계 | 1.256 | 0.119 | 0.86 |
| 전기 및 전자기기 | 0.677 | 0.000 | 0.10 |
| 정밀기기 | 0.000 | 0.129 | 1.16 |
| 수송장비 | 2.200 | 0.110 | 2.1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4.024 | 0.216 | 7.21 |
| 전력, 가스 및 수도 | 3.476 | 0.060 | 1.94 |
| 건설 | 22.538 | 0.125 | 1.94 |
| 도소매 | 0.619 | 0.311 | 1.94 |
| 음식점 및 숙박 | 1.139 | 0.153 | 1.94 |
| 운수 및 보관 | 0.850 | 0.930 | 1.94 |
| 통신 및 방송 | 0.850 | 0.840 | 1.94 |
| 금융 및 보험 | 0.628 | 0.379 | 1.94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850 | 6.089 | 1.94 |
| 공공행정 및 국방 | 0.850 | 0.990 | 1.94 |
| 교육 및 보건 | 0.850 | 1.240 | 1.94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850 | 0.870 | 1.94 |
| 기타 | 0.850 | 0.990 | 1.94 |

다. 2003년 산업구조

본 연구는 2003년도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2003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1990년 이후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추후 모형을 통해 산업과 관련된 관세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변화 및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⁸⁾.

1) 총산출액 변화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서비스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농림어업 등의 생산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생산비중은 1990년 5.1%에서 2003년 2.3%로 약 절반 정도의 크기로 축소되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2003년 44.5%로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참고로 일본의 2000년 서비스업 생산비중은 54.4%로 제조업의 31.2%보다 높다. 향후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개별 산업별 산출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섬유 및 가죽제품 업종의 생산비중이 1990년 이후 절반 이상 축소되어 2.6%를 차지했고, 음식료품 업종도 3.9%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생산비중은 9.2%로 증가하였다. 지난 10여년간의 생산비중 변화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 업종의 생산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전자 및 전기기기 업종의 신장이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특징임을 알 수 있다.

18)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다 세부적 설명과 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II-5> 총산출액 비중 변화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 농림어업 | 5.1 | 3.8 | 2.7 | 2.3 |
| 광업 | 0.5 | 0.4 | 0.2 | 0.2 |
| 제조업 | 49.6 | 47.6 | 46.5 | 44.5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12.2 | 11.6 | 9.4 | 10.4 |
| 서비스 | 30.3 | 34.1 | 39.0 | 40.6 |
| 기타 | 2.3 | 2.5 | 2.2 | 2.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2) 수출입 및 수입의존도 변화

가) 수출 변화

2003년 총수출액은 272.8조원으로 2000년의 237.0조원에 비해 약 1.15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2000년의 경우 1995년(113.9조원)에 비해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공산품 수출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를 중심으로 한 조립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에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비중은 2003년 32.1%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다음으로 수송장비 제품의 수출비중이 2003년 15.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제품들의 수출비중 증가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두드러져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제품이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출비중은 10.0%로 1990년 31.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비중 축소에 기인한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Ⅲ.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55

수출비중은 1990년 25%에서 2003년 6.6%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1990년대의 섬유 및 가죽제품 중심의 수출에서 2000년 이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제품 중심의 수출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6> 수출 비중 변화

(단위: %)

| 산 업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수산물 | 1.6 | 0.8 | 0.3 | 0.2 |
| 광산물 | 0.1 | 0.1 | 0.0 | 0.0 |
| 공산물 | 79.5 | 80.6 | 81.3 | 84.7 |
| 소비재제품 | 31.4 | 18.6 | 13.3 | 10.0 |
| 음식료품 | 2.2 | 1.6 | 1.3 | 1.3 |
| 섬유 및 가죽제품 | 25.0 | 14.3 | 9.7 | 6.6 |
| 목재 및 종이제품 | 0.8 | 0.8 | 0.9 | 0.8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1 | 0.1 | 0.1 | 0.1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3.3 | 1.7 | 1.3 | 1.2 |
| 기초소재제품 | 17.7 | 18.3 | 19.5 | 21.0 |
| 석유 및 석탄제품 | 1.6 | 2.1 | 5.1 | 3.7 |
| 화학제품 | 6.7 | 8.9 | 8.4 | 10.0 |
| 비금속광물제품 | 0.8 | 0.4 | 0.4 | 0.4 |
| 제1차 금속제품 | 5.4 | 4.8 | 4.2 | 5.3 |
| 금속제품 | 3.3 | 2.2 | 1.3 | 1.5 |
| 조립가공제품 | 30.4 | 43.6 | 48.5 | 53.7 |
| 일반기계 | 5.8 | 4.0 | 4.1 | 4.9 |
| 전기 및 전자기기 | 17.5 | 27.6 | 30.5 | 32.1 |
| 정밀기기 | 1.1 | 1.0 | 0.9 | 1.1 |
| 수송장비 | 6.0 | 11.0 | 13.0 | 15.5 |
| 기타 | 18.8 | 18.6 | 18.3 | 15.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나) 수입 변화

2003년 총수입액은 228.3조원으로 2000년의 240.0조원과 큰 변화가 없다. 공산품의 수입비중은 1990년대 75% 수준에서 2000년 이후 67~6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입비중 변화에는 광산품과 서비스 제품의 수입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광산품은 원유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그 수입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 중에서 수입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조립가공제품이며, 이 중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약 5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비중 추이 변화를 보면, 2003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입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초소재제품의 수입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의 수입비중 증가가 이를 이끌었다. 이들 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도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7> 수입 비중 변화

(단위: %)

| 산 업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수산물 | 5.7 | 4.3 | 2.3 | 2.6 |
| 광산물 | 12.4 | 10.1 | 16.7 | 15.5 |
| 공산물 | 74.8 | 75.3 | 67.1 | 68.1 |
| 소비재 제품 | 13.0 | 13.0 | 10.0 | 10.9 |
| 음식료품 | 4.7 | 4.1 | 3.7 | 4.2 |
| 섬유 및 가죽제품 | 4.5 | 4.7 | 3.3 | 3.8 |
| 목재 및 종이제품 | 2.7 | 2.8 | 1.7 | 1.6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2 | 0.3 | 0.3 | 0.3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0.8 | 1.1 | 0.9 | 1.1 |
| 기초소재제품 | 27.4 | 24.5 | 20.4 | 24.4 |
| 석유 및 석탄제품 | 4.4 | 4.2 | 4.6 | 5.2 |
| 화학제품 | 12.2 | 9.7 | 8.0 | 9.4 |
| 비금속광물제품 | 1.3 | 1.0 | 0.7 | 1.1 |
| 제1차 금속제품 | 8.5 | 8.6 | 6.3 | 7.9 |
| 금속제품 | 1.0 | 0.9 | 0.7 | 0.8 |
| 조립가공제품 | 34.5 | 37.8 | 36.7 | 32.8 |
| 일반기계 | 13.9 | 14.4 | 8.1 | 7.2 |
| 전기 및 전자기기 | 13.4 | 13.8 | 21.5 | 19.4 |
| 정밀기기 | 3.3 | 4.6 | 3.8 | 3.5 |
| 수송장비 | 3.9 | 4.9 | 3.3 | 2.8 |
| 기타 | 7.1 | 10.2 | 13.9 | 13.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다) 수입의존도 변화

본 연구에서 수입의존도는 총투입액 중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¹⁹⁾.

$$\text{수입의존도} = \frac{\text{중간재 수입액}}{\text{총 투입액}} \times 100$$

2003년 수입의존도를 보면 전 산업 평균이 12.0%로 2000년(13.1%)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의 약 10% 수준에 비해서는 상승하였다. 2003년 산업별 수입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20.5%로 가장 높다.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대 18%에서 2000년 이후 20%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조립가공업종의 수입의존도가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대 약 23% 수준에서 2000년대 약 32%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결과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관세율 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수출 지향적 무역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최종재와 중간재 등 수입재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되었고 관세환급제도나 감면제도도 적극 활용되었다. 그 결과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관련 산업의 발달이 늦어지고 이들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 따라서 수입의존도를 수입중간투입계수 또는 수입중간투입비중이라고도 한다. 수입의존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표 III-8> 수입의존도 변화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 농림어업 | 2.1 | 2.4 | 2.5 | 3.1 |
| 광업 | 0.6 | 0.8 | 0.8 | 1.1 |
| 제조업 | 18.0 | 18.0 | 21.8 | 20.5 |
| 소비재 업종 | 13.7 | 14.7 | 12.8 | 12.9 |
| 음식료품 | 8.7 | 10.4 | 9.6 | 10.6 |
| 섬유 및 가죽 제품 | 16.9 | 18.7 | 15.2 | 16.3 |
| 목재 및 종이 제품 | 27.6 | 24.6 | 21.9 | 19.7 |
| 인쇄, 출판 및 복제 | 4.6 | 4.8 | 3.9 | 4.1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11.5 | 13.6 | 13.6 | 12.7 |
| 기초소재 업종 | 23.1 | 20.9 | 26.4 | 23.6 |
| 석유 및 석탄 제품 | 64.3 | 53.1 | 58.6 | 56.1 |
| 화학제품 | 20.6 | 19.5 | 19.3 | 19.2 |
| 비금속 광물 제품 | 8.7 | 7.0 | 6.9 | 7.5 |
| 제1차 금속 제품 | 18.8 | 18.9 | 19.7 | 18.7 |
| 금속제품 | 10.3 | 7.7 | 8.9 | 7.6 |
| 조립가공 업종 | 18.0 | 17.5 | 23.1 | 21.4 |
| 일반기계 | 13.9 | 13.6 | 11.7 | 10.8 |
| 전기 및 전자 기기 | 23.8 | 23.3 | 32.4 | 31.8 |
| 정밀기기 | 18.7 | 11.4 | 17.5 | 20.7 |
| 수송장비 | 10.4 | 12.6 | 10.8 | 11.1 |
| 전 산업 | 10.8 | 10.9 | 13.1 | 12.0 |

2. 예산제약하의 최적관세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크게 두 가지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심관세율 수준을 조정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가. 분석시나리오 설정

1) 고려되는 제약조건 가정들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²⁰⁾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제약하의 최적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대표적 소비자의 후생함수를 최대화시키는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자 한다.

Max 사회적 후생

s.t. 1) 일반균형조건

2) 정책적 제약조건

본 연구에서 사회적 후생은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이다. 제약조건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현실 경제를 묘사하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난 균형방정식 등 일반균형 모형의 조건들이다. 이런 조건들은 가계의 효용 최대화 및 기업의 이윤 최대화를 통한 행태방정식들, 각 생산부문의 무(無)이윤 조건, 재화시장, 요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의 균형조건 등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 제약조건으로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염두에 둘 수 있는 정책적 제약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적 제약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세수입의 실질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관세율 변화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생산요소와 재화들 간의 상대가격체계가 바뀌어 자원 재분배가 발생하여 정부의 실질세수입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실질세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과거의 경제자료를 이용하여 최적관세율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부의 공공재 공급 등 개별적 지출행위가 관세율 변화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에도 불구하

20) 본 연구에서의 최적관세율이란 경제적·정치적 여건 혹은 정부의 예산 제약 등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 아래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고 실질 수준은 유지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그 당시 지출행동을 보장해 주도록 설정하는 것이다²¹⁾.

정부의 실질세수가 유지된다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국 모형을 가정하고 있는 본 모형에서 사회적 후생은 분명 증가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최적화를 논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약조건은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공공재의 공급 등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세수입 중 관세세수가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고 가정한다. 즉, 관세를 통한 실질세수입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우리나라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재정적 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함을 의미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50~70년대 우리나라 관세세수는 국가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현상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국세 과세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관세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발전과 함께 내국세 과세기반이 충실해지면서 또한 관세로 인한 자원 배분상의 비효율성이 부각되면서 관세수입의 비중도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관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1980년대 약 15% 수준에서 1990년대 말부터 약 5~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관세율 수준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한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을 수입재에 적용할 수 없다²²⁾. 따라서 WTO 양허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중요한 제약조건 중의

21) 본 연구에서 정부의 효용함수는 콕-더글러스 함수에 의해 기술된다고 가정한다. 콕-더글러스 함수는 세수규모, 가격체계에 상관없이 각 재화별 명목지출액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22) WTO 비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WTO 양허세율이 적용 받지 않아 그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역의 거의 전부가 WTO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율 부과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규약에 따른 제약조건과 함께 국내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세율 제약조건으로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 수준을 들 수 있다. 농산물 및 음식료품에 대해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 결과 WTO 양허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몇몇 주요 품목들은 공산품과 달리 WTO 양허세율이 곧 실행세율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품목들의 세율을 실행세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농산물 관세율은 농민층을 비롯해서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관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농산물 및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기준연도의 실적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전제 아래 다른 산업의 관세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런 제약조건들이 없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모형에서의 소비자 후생은 분명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제약들을 고려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고려한다.

2) 분석 시나리오

앞서 언급한 정책적 제약조건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03년도 자료와 연관시키면, 우선 2003년 정부 소비지출은 82.46조원이며 이러한 정부 소비로부터의 효용수준은 새로운 최적관세율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본 모형의 자료에서 2003년 정부수입은 175.542조원이며 이 중 관세수입은 6.874조원이다. 따라서 2003년 정부의 재정수입 중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가 되며 이런 관세수입 비중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관세율 수준과 관련된 제약으로 개별 산업별 평균 양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63

허세율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개별 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수준이다. WTO 양허세율은 HS 세번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S 세번별 양허세율을 산업별로 묶어 평균 양허세율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한다.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 인하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첫째, 2003년 실적세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하여 최적관세율을 계산하고, 둘째, 제약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한다.

<표 III-9> 기존 관세율 수준 및 양허세율 제약(2003년)

(단위: %)

| 산 업 | 기존 관세율 (실적세율) | WTO 관세율제약 (양허세율) |
|-------------|------------------|---------------------|
| 농림수산물 | 8.60 | 54.35 |
| 광산물 | 1.71 | 4.17 |
| 음식료품 | 14.90 | 61.02 |
| 섬유 및 가죽제품 | 6.23 | 19.34 |
| 목재 및 종이제품 | 3.15 | 5.73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58 | 4.75 |
| 석유 및 석탄제품 | 1.52 | 9.61 |
| 화학제품 | 4.02 | 9.85 |
| 비금속광물제품 | 5.37 | 10.52 |
| 제1차 금속제품 | 1.48 | 5.68 |
| 금속제품 | 4.43 | 12.71 |
| 일반기계 | 3.95 | 9.05 |
| 전기 및 전자기기 | 1.05 | 5.31 |
| 정밀기기 | 3.24 | 8.37 |
| 수송장비 | 3.34 | 7.02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51 | 10.90 |

주: WTO 관세율 자료대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양허관세율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 적용 세율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세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 분석 결과

1) 최적 관세율과 후생 변화

현재의 관세세수 비중을 유지하면서 또한 앞서 언급한 제약조건을 가정하여 최적관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존 관세율 체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관세율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14개 산업군 중 6개 산업군에 대해 무세를 최적관세율로 제시하였고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다. 그 밖의 산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최적세율로 무세를 제시한 산업으로는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제품 등이다. 반면 석유 및 석탄제품은 기존의 관세율 1.52%에서 8.9%로,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05%에서 WTO 양허세율 수준인 5.3%로 대폭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수송장비 산업의 최적관세율은 기존 관세율과 거의 동일하게 3.3%가 제시되었으며, 정밀기기 산업도 기존 관세율 3.24%와 거의 다르지 않는 3.3%가 최적관세율로 제시되었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는 동등변이(Equivalent Variation) 개념으로 0.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의해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 증대는 미미하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가 변함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 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적 관세율 체계

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세율 제약 중의 하나인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에 대해 기존의 관세율 수준으로 고정하는 대신 최대 10%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 최적관세율을 계산하면, 우선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51%로 나타나 예상대로 농산물 관세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약간의 후생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다른 산업들의 최적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석유 및 석탄제품의 최적관세율이 8.9%에서 9.6%로 WTO 양허수준까지 인상시킬 것이 제안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섬유 및 가죽제품과 제1차 금속제품의 관세율이 농산물 관세율을 유지할 때보다 약 0.4%p 상승하고 반면 일반기계 산업의 관세율이 0.2%p 하락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 밖에 정밀기기 산업 0.1%p, 수송장비가 0.2%p 상승하였다.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하(약 86%)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상(430%)을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무세화가 제시된 산업 중 광산품과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은 현실적으로도 무세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우선 광산품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도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무세화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품의 관세는 무세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의 기존 실적세율이 0.58%로 매우 낮고 이미 양허세율이 무세화된 품목들이 있어서 향후 관세 인하에 큰 문제가 없는 산업이다. 반면, 목재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기존 실적세율이 3~5.5%로 이들 산업의 무세화에는 무리가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23)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에 대해 정책적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의 최적 관세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모두 무세가 최적관세율이고 이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는 0.078%였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2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약 86% 정도 대폭 인하하여 새로운 실적세율이 0.9~1.3% 수준으로 감축되면 섬유산업이 이처럼 급격한 관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표 III-10>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

(단위: %)

| 산 업 | 기존 실적 관세율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
|-------------|--------------|-------------------------|----------------------------------|
| 농림수산물 | 8.60 | 8.6 | 7.7 |
| 광산물 | 1.71 | 0.0 | 0.0 |
| 음식료품 | 14.90 | 14.9 | 13.4 |
| 섬유 및 가죽제품 | 6.23 | 0.9 | 1.3 |
| 목재 및 종이제품 | 3.15 | 0.0 | 0.0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58 | 0.0 |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 1.52 | 8.9 | 9.6 |
| 화학제품 | 4.02 | 0.0 | 0.0 |
| 비금속광물제품 | 5.37 | 5.8 | 5.8 |
| 제1차 금속제품 | 1.48 | 0.4 | 0.8 |
| 금속제품 | 4.43 | 0.0 | 0.0 |
| 일반기계 | 3.95 | 2.6 | 2.4 |
| 전기 및 전자기기 | 1.05 | 5.3 | 5.3 |
| 정밀기기 | 3.24 | 3.3 | 3.4 |
| 수송장비 | 3.34 | 3.3 | 3.5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51 | 0.0 | 0.0 |
| 가계의 후생증가 | 기준 | 0.046 | 0.051 |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67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낮추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ITA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추진되었고, 향후 WTO DDA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을 WTO 양허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²⁴⁾.

이 밖에 석유 및 석탄제품의 관세율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세수 중립제약과 관세세수의 일정 비중 유지를 가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과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설정하여 최적관세율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관세율은 기존의 실적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계산하였다.

우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의 관세율로 고정할 경우,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38%였고,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최대 10% 인하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둔 경우에는 0.042%로 나타났다. 즉, 앞서 계산한 경우보다 최적관세율에 더 많은 제한을 둬으로써 그 만큼 가계의 후생 증대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론적으로 제시된 최적관세율 구조는 우선 광산품, 금속제품,

24) DDA협상에서 무세화가 언급되는 분야로는 자동차와 그 부품, 자전거와 그 부품, 화학, 전기 및 전자제품, 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석 및 귀금속, 기초원자재(raw materials), 스포츠용품, 섬유, 의류 및 신발 등 12개 분야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기 및 전자제품 분야의 무세화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 대해서만 무세화가 제안되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와 화학제품의 관세율은 인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밖의 관세율은 모두 인상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 인하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약 7개 산업의 최적관세율은 기존 실적세율보다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시나리오별 최적관세율 체계(섬유, 전자 관세율에 제약 가정)

(단위: %)

| 산 업 | 기존 실적세율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유지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 인하 |
|-------------|---------|------------------------|--------------------------------|
| 농림수산물 | 8.60 | 8.6 | 7.7 |
| 광산물 | 1.71 | 0.0 | 0.0 |
| 음식료품 | 14.90 | 14.9 | 13.4 |
| 섬유 및 가죽제품 | 6.23 | 3.1 | 3.1 |
| 목재 및 종이제품 | 3.15 | 3.8 | 5.7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58 | 0.2 | 0.4 |
| 석유 및 석탄제품 | 1.52 | 9.6 | 9.6 |
| 화학제품 | 4.02 | 1.3 | 2.1 |
| 비금속광물제품 | 5.37 | 8.9 | 8.7 |
| 제1차 금속제품 | 1.48 | 3.8 | 3.8 |
| 금속제품 | 4.43 | 0.0 | 0.0 |
| 일반기계 | 3.95 | 4.2 | 3.8 |
| 전기 및 전자기기 | 1.05 | 1.0 | 1.0 |
| 정밀기기 | 3.24 | 6.1 | 5.9 |
| 수송장비 | 3.34 | 4.5 | 4.6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51 | 0.0 | 0.0 |
| 가계의 후생증가 | 기준 | 0.038 | 0.042 |

주: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은 현재의 관세율 수준보다 높을 수 없다는 가정을 이용하였음.

2) 국내생산 및 수출입 변화

관세율 체계의 변화는 수입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내수재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경제 내에서의 자원 재배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원 재배분을 통해 개별 산업별 생산, 가계의 소비 변화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 중 관세율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별 국내생산 및 수출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가) 국내생산 변화

정부의 실질 관세세수를 기준연도인 2003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또한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도 기준연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수송장비 산업의 생산이 2.57%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수송장비의 최적관세율은 기존의 실적관세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율의 변화는 없었다.

반면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국내생산은 -5.05%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은 기존 5.51%에서 무세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무세화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그 만큼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이 기존의 6.2%에서 0.9%로 크게 감소하지만 국내생산은 약 0.4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폭적인 관세율 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섬유제품의 수출도 증가하여 국내생산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국내생산은 -2.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관세율이 기존 1.05%에서 5.3%로 크게 인상되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볼 수입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국내생산 감소와 함께 수입도 감소함으로써 그 만큼 수

출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여 수출규모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기존에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율 1.05%로 섬유 및 의류산업의 6.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적관세율로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율은 5.3%로 크게 인상되고 섬유 및 의류산업의 관세율이 0.9%로 크게 하락하면서 자원이 전기 및 전자산업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모형에서 자원 배분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져 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축되는 산업이 있을 경우, 자원 배분이 이 산업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간 자원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이론적인 CGE 모형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섬유산업의 축소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확장임을 앞서 살펴 보았다. 특히 수출규모를 보면 1990년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 비중이 25%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였지만 2003년 기준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은 6.6%로 감소한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수출비중은 32.1%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론적인 최적관세율 체계를 통해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자원을 섬유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태적인 모형에서는 분명히 가계의 후생을 증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여 앞서 사용하였던 보다 현실적인 관세율 제약에 대한 가정을 다시 한 번 설정하여 보자. 즉, 앞서와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은 현재보다 50%까지만 인하할 수 있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기존보다 더 인상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Ⅲ.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71

<표 III-12>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

(단위: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전기 및 전자기기 관세율 인상 불가 섬유산업 관세율 최대 50%까지 인하 | |
|-------------|-------------------------|---|----------------------------------|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
| 농림수산물 | 0.14 | -0.01 | 0.05 |
| 광산물 | 1.39 | 1.41 | 1.41 |
| 음식료품 | 0.14 | 0.02 | 0.13 |
| 섬유 및 가죽제품 | 0.49 | -0.28 | -0.42 |
| 목재 및 종이제품 | -0.27 | -0.80 | -0.88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14 | -0.06 | -0.11 |
| 석유 및 석탄제품 | 2.24 | 2.25 | 2.26 |
| 화학제품 | -0.20 | -0.30 | -0.24 |
| 비금속광물제품 | -0.03 | 0.25 | 0.24 |
| 제1차 금속제품 | 0.17 | 0.34 | 0.34 |
| 금속제품 | 0.21 | -0.48 | -0.47 |
| 일반기계 | 0.30 | 0.00 | -0.06 |
| 전기 및 전자기기 | -2.13 | 0.33 | 0.31 |
| 정밀기기 | -0.19 | 1.80 | 1.72 |
| 수송장비 | 2.57 | 0.54 | 0.57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05 | -8.30 | -8.60 |
| 전력, 가스 및 수도 | 0.11 | 0.12 | 0.12 |
| 건설 | -0.01 | -0.05 | -0.05 |
| 도소매 | 0.06 | -0.03 | -0.03 |
| 음식점 및 숙박 | 0.15 | 0.03 | 0.10 |
| 운수 및 보관 | 0.20 | -0.10 | -0.08 |
| 통신 및 방송 | 0.00 | 0.00 | -0.00 |
| 금융 및 보험 | 0.03 | -0.01 | -0.01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3 | -0.00 | 0.00 |
| 공공행정 및 국방 | 0.01 | 0.00 | 0.00 |
| 교육 및 보건 | 0.04 | 0.08 | 0.06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13 | 0.05 | 0.03 |
| 기타 | 0.08 | -0.03 | -0.03 |

그 결과 농산물과 음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국내생산은 -0.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국내생산은 0.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 모두 국내생산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국내생산 증가가 컸던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 이번에는 최적관세율이 인상되면서 국내생산이 0.54%로 약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정밀기기 산업은 최적관세율이 상승하여 그 만큼 수입이 감소하고, 또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내생산은 1.8% 상승하여 다른 분야의 자원이 정밀기기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입 변화

우선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준연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만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26.57% 증가하여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은 기존 5.51%에서 최적관세로 무세가 제시되었고, 또한 국내생산은 -5.05%로 가장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관세로 무세가 제시되었던 산업 중 금속제품의 수입이 2.50%로 증가하였고, 그 밖에 목재 및 종이제품과 인쇄, 출판 및 복제제품의 경우에는 수입규모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이 기존의 6.2%에서 0.9%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도 예상대로 크게 증가하여 7.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던 석유 및 석탄제품의 경우 예상대로 수입이 -6.75% 감소하였고,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수입도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73

<표 III-13> 시나리오별 수입 변화

(단위: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전기 및 전자기기 관세율 인상 불가 섬유산업 관세율 최대 50%까지 인하 | |
|-------------|-------------------------|---|----------------------------------|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
| 농림수산물 | -0.045 | -0.07 | 0.27 |
| 광산물 | 1.45 | 1.49 | 1.49 |
| 음식료품 | -0.02 | -0.04 | 0.45 |
| 섬유 및 가죽제품 | 7.09 | 4.13 | 4.14 |
| 목재 및 종이제품 | -0.34 | -0.87 | -1.00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69 | 1.05 | 0.96 |
| 석유 및 석탄제품 | -6.75 | -7.22 | -7.22 |
| 화학제품 | 1.02 | 0.71 | 0.45 |
| 비금속광물제품 | -0.62 | -1.51 | -1.45 |
| 제1차 금속제품 | 0.18 | -0.82 | -0.84 |
| 금속제품 | 2.50 | 2.94 | 2.91 |
| 일반기계 | 0.67 | -0.02 | 0.14 |
| 전기 및 전자기기 | -1.62 | 0.19 | 0.17 |
| 정밀기기 | 0.01 | -0.97 | -0.94 |
| 수송장비 | -0.84 | -2.08 | -2.26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26.57 | 32.16 | 32.70 |
| 전력, 가스 및 수도 | -1.08 | -0.70 | -0.75 |
| 건설 | -0.86 | -0.13 | -0.17 |
| 도소매 | -0.74 | -0.29 | -0.37 |
| 음식점 및 숙박 | -0.67 | -0.26 | -0.44 |
| 운수 및 보관 | -0.56 | -0.01 | -0.08 |
| 통신 및 방송 | -0.58 | -0.24 | -0.32 |
| 금융 및 보험 | -0.67 | -0.26 | -0.34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64 | -0.24 | -0.31 |
| 공공행정 및 국방 | -0.76 | -0.24 | -0.32 |
| 교육 및 보건 | -0.90 | -0.32 | -0.37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74 | -0.29 | -0.35 |
| 기타 | -1.15 | -0.52 | -0.64 |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수송장비 산업의 경우 수입은 -0.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장비 산업의 관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관세율은 기존보다 인상할 수 없다는 가정을 사용할 경우, 예상대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4.13%로 앞서 계산한 7.09%보다 수입 증가율이 축소되었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관세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입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두 산업의 수입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10%까지 인하할 경우에는 예상대로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수입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출 변화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관세율을 기준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수송장비 산업의 수출이 4.05% 증가하여 가장 큰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수송장비 산업은 최적관세율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국내생산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 국내생산 증가와 수출 증가로 연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세율 인상이 큰 석유 및 석탄제품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2.24%로 나타났다. 관세율 인상으로 국내생산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무세가 제시되었던 금속제품에서도 수출이 1.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제품은 무세로 수입 증가율도 2.50%로 크다. 관세율 인하로 수입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내수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생산물의 구성이 수출재 위주로 바뀌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75

<표 III-14> 시나리오별 수출 변화

(단위: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전기 및 전자기기 관세율 유지 섬유산업 관세율 최대 50%까지 인하 | |
|-------------|-------------------------|--|-------------------------------------|
| |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유지 | 농산물 및 음식료품 관세율 최대 10%까지 인하 |
| 농림수산물 | 0.49 | 0.11 | 0.20 |
| 광산물 | 2.45 | 1.62 | 1.72 |
| 음식료품 | 0.23 | 0.05 | 0.18 |
| 섬유 및 가죽제품 | 1.84 | 0.42 | 0.25 |
| 목재 및 종이제품 | 0.97 | -0.59 | -0.94 |
| 인쇄, 출판 및 복제 | 1.26 | 0.178 | -0.07 |
| 석유 및 석탄제품 | 2.24 | 2.25 | 2.26 |
| 화학제품 | 0.12 | -0.16 | -0.13 |
| 비금속광물제품 | 1.77 | 0.90 | 0.93 |
| 제1차 금속제품 | 0.42 | 0.18 | 0.19 |
| 금속제품 | 1.94 | -0.99 | -0.92 |
| 일반기계 | 0.90 | -0.12 | -0.12 |
| 전기 및 전자기기 | -2.71 | 0.41 | 0.40 |
| 정밀기기 | -0.19 | 1.80 | 1.72 |
| 수송장비 | 4.05 | 0.65 | 0.6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1.60 | -7.58 | -8.13 |
| 전력, 가스 및 수도 | 2.28 | 1.59 | 1.66 |
| 건설 | 10.12 | 0.86 | 1.35 |
| 도소매 | 0.28 | 0.05 | 0.07 |
| 음식점 및 숙박 | 0.60 | 0.18 | 0.39 |
| 운수 및 보관 | 0.42 | -0.13 | -0.08 |
| 통신 및 방송 | 0.26 | 0.11 | 0.14 |
| 금융 및 보험 | 0.25 | 0.07 | 0.10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30 | 0.10 | 0.13 |
| 공공행정 및 국방 | 0.34 | 0.11 | 0.14 |
| 교육 및 보건 | 0.45 | 0.25 | 0.24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50 | 0.19 | 0.20 |
| 기타 | 0.59 | 0.17 | 0.22 |

섬유 및 가죽제품도 관세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데 국내생산 증가와 함께 수출도 1.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도 수입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내수재 수요가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수출 위주로 생산이 바뀌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은 -2.71%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생산도 감소함으로써 수출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전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었던 자원이 다른 산업분야로 분산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관세율은 기존보다 인상할 수 없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보자. 이럴 경우, 예상대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0.42%로 감소하고 전기 및 전자기기의 수출 증가율은 0.41%로 증가하였다. 관세율 제약으로 인해 그 만큼 자원 재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대체탄력성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 비교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본 모형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문석웅(1999)를 이용하여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2003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지출액수로 가중평균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이 중 문석웅(1999)에서는 정밀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천(1996)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밀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에 대한 대체탄력성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문석웅(1999)에서 제시한 또 다른 정밀기기와 제1차 금속제품의 수치를 이용할 경우 모형의 결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77

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명현·성명재(2001)에서 사용한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이용할 경우 모형의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III-15>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비교

(단위: %)

| 산업 | 모형에 사용된 대체탄력성(A) | 다른 가능한 대체탄력성(B) | 기존연구에 사용된 대체탄력성(C) |
|-------------|---------------------|--------------------|--------------------------|
| 농림수산물 | 0.37 | 0.37 | 0.37 |
| 광산물 | 0.05 | 0.05 | 0.05 |
| 음식료품 | 0.31 | 0.31 | 0.27 |
| 섬유 및 가죽제품 | 3.25 | 3.25 | 3.68 |
| 목재 및 종이제품 | 0.05 | 0.05 | 0.05 |
| 인쇄, 출판 및 복제 | 5.51 | 5.51 | 5.51 |
| 석유 및 석탄제품 | 1.05 | 1.05 | 1.05 |
| 화학제품 | 0.51 | 0.51 | 0.95 |
| 비금속광물제품 | 0.49 | 0.49 | 0.49 |
| 제1차 금속제품 | 0.71 | 1.27 | 1.27 |
| 금속제품 | 0.72 | 0.72 | 0.72 |
| 일반기계 | 0.86 | 0.86 | 0.65 |
| 전기 및 전자기기 | 0.10 | 0.10 | 0.10 |
| 정밀기기 | 1.16 | 0.29 | 0.26 |
| 수송장비 | 2.19 | 2.19 | 1.7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7.21 | 7.21 | 1.73 |

주: (A): 문석웅(1999)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B): 문석웅(1999)에서 다른 수치를 제시한 제1차 금속제품과 정밀기기의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C): 문석웅(1998)을 바탕으로 이명현·성명재(2001)에서 사용한 국산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 단 문석웅(1998) 대체탄력성을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다시 가중평균하였음.

이들 세 가지의 국산재와 수입 재간의 대체탄력성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대체탄력성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산업으로는 화학제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이 있고, 제1차 금속제품과 정밀기기도 서로 다른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계산한 최적관세율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가계의 후생 증가는 본 모형에서 사용한 대체탄력성(A)과 문석웅(1999)에서 다른 수치를 제시한 제1차 금속제품과 정밀기기의 대체탄력성(B)을 이용한 결과가 거의 같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체탄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다만, 기존의 이명헌·성명재(2001)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대체탄력성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모형에서 사용한 대체탄력성(A) 결과보다 가계의 후생 증가가 0.038%로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대체탄력성(A)과 다른 제1차 금속제품과 정밀기기의 대체탄력성(B)을 이용한 결과에서 제1차 금속제품의 최적관세율은 0.4%로 동일하게 제시되었으나 정밀기기의 최적관세율은 각각 3.3%와 6.5%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정밀기기의 최적관세율 해석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대체탄력성(A)과 기존 연구에 사용된 탄력성(C)과 차이를 보인 산업들 중 특히 대체탄력성에 큰 차이를 보였던 화학제품과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의 최적관세율은 대체탄력성과 상관없이 무세가 최적관세율로 제시되었다. 또한 서로 상이한 대체탄력성을 사용하였던 섬유 및 가죽제품에서는 대체탄력성에 따라 최적관세율이 각각 0.8~0.9%에서 1.3%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수송장비 산업에서는 대체탄력성에 따라 최적관세율이 3.1~3.3%에서 2.5%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비교된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대체탄력성이 동일한 산업에서도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79

다른 산업들의 대체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관세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 대체탄력성은 모두 0.49%로 동일하였지만, 최적관세율은 5.8%, 5.0% 그리고 4.1%로 기존 연구의 대체탄력성을 사용한 경우의 최적관세율이 제일 낮게 제시되었다.

<표 III-16> 대체탄력성에 따른 최적관세율 변화

(단위: %)

| 산 업 | 기존 실적세율 | 모형에 사용된 대체탄력성(A) | 다른 가능한 대체탄력성(B) | 기존연구에 사용된 대체탄력성(C) |
|-------------|------------|---------------------|--------------------|--------------------------|
| 농림수산물 | 8.60 | 8.6 | 8.6 | 8.6 |
| 광산물 | 1.71 | 0.0 | 0.0 | 0.0 |
| 음식료품 | 14.90 | 14.9 | 14.9 | 14.9 |
| 섬유 및 가죽제품 | 6.23 | 0.9 | 0.8 | 1.3 |
| 목재 및 종이제품 | 3.15 | 0.0 | 0.0 | 0.0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58 | 0.0 | 0.0 |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 1.52 | 8.9 | 8.8 | 9.5 |
| 화학제품 | 4.02 | 0.0 | 0.0 | 0.1 |
| 비금속광물제품 | 5.37 | 5.8 | 5.0 | 4.1 |
| 제1차 금속제품 | 1.48 | 0.4 | 0.4 | 0.0 |
| 금속제품 | 4.43 | 0.0 | 0.0 | 0.0 |
| 일반기계 | 3.95 | 2.6 | 1.8 | 1.7 |
| 전기 및 전자기기 | 1.05 | 5.3 | 5.3 | 5.3 |
| 정밀기기 | 3.24 | 3.3 | 6.5 | 5.9 |
| 수송장비 | 3.34 | 3.3 | 3.1 | 2.5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51 | 0.0 | 0.0 | 0.0 |
| 가계의 후생증가 | 기준 | 0.046 | 0.047 | 0.038 |

3.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을 때의 효과를 CGE 모형을 통해 계산해보고자 한다. 관세율 수준의 전반적인 인하는 곧 우리나라가 현재 설정해 놓고 있는 중심세율 수준을 인하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2차레에 걸친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통해 8% 중심세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앞서도 보았듯이 현재까지도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이 7,791개 품목으로 전체 증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67%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2003년의 경우에도 중심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은 7,647개로 전체 증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68.6%를 차지한다²⁵⁾.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 인하는 현재 중심세율 8%를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에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중심관세율 구조가 아니라 균등 혹은 단일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관세율이 새로운 단일관세율 수준보다 낮은 일부 산업의 경우 관세율 수준이 인상되게 된다. 혹은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설정하고 기존에 이미 이 수준보다 낮은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 수준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 비율 낮추어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자.

25) 연도별로 품목 수(HSK 10단위 세번 수)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가. 분석 시나리오 설정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인하하는 것은 중심세율을 현재의 8%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중심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중심세율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에서 가장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WTO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WTO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DDA협상은 당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발하여 2004년 12월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DDA협상이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다. 모든 회원국들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향후 원만하게 DDA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DDA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DDA협상이 성사되었을 때의 관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중심세율을 설정하여 CGE 모형을 통해 중심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예측해보자.

DD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해 가장 근래 이루어진 연구로는 정재호·박순찬(2006)이 있다. 정재호·박순찬(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이용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실행관세율은 6.32%에서 DDA 이행 이후 2.79~4.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²⁶⁾. 다시 말해 우리나라

26)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순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위스 공식 계수 5와 10, 그리고 미양허 품목에 대한 constant non-linear mark-up 비율 5%p와 30%p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계수로 10을 적용하고 미양허 품목의 mark-up으로 30%p를 적용한 가장 점진적인 경우

평균관세율은 현재보다 30.2%(= 441/632)~55.8%(= 279/632) 인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의 효과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계산해 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A는 DDA협상 결과 가장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여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이 30.2%(= 441/632) 인하된 경우를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인하한 1.72%를 단일관세율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2)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인하한 1.72%를 단일관세율로 도입하되 기존 관세율이 1.72%보다 낮다면 기존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와 같이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여 중심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중심관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지만 그보다 낮은 경우는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본 모형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실적세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실적세율은 기본관세율의 중심세율이 8%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현재 중심관세율 8%를 30.2% 인하할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은 5.58%이다. 3)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기존 관세율 수준에서 동일하게 30.2%씩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가 유지된다.

시나리오 B는 DDA협상 결과로 가장 급격하게 관세율이 인하여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즉,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이 55.8%(= 279/632) 인하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기존 평균관세율을 55.8% 인하한 1.09%를 단일관세율 수준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2) 1.09%를 단일관세율을 도입하되 기

DDA 이후 평균 실행세율은 4.41%가 되며, 가장 급진적인 경우인 스위스 공식 계수 5를 적용하고 미양허 품목의 mark-up으로 5%p를 적용하면 DDA 이후 평균 실행세율은 2.79%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호·박순찬(2006) 참고.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83

존 관세율이 1.09%보다 낮으면 기존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중심관세율 8%를 55.8% 인하하면 새로운 중심관세율은 3.53%가 된다. 3) 모든 산업의 관세율을 기존 관세율 수준에서 모두 55.8%씩 인하하는 방안이다.

<표 III-17> 중심관세율 인하 효과 분석 시나리오

| | | |
|--------|-----|--|
| 시나리오 A | A-1 | 기존 평균관세율을 30.2%(= 441/632) 감축한 1.72%를 전체 산업에 단일관세율로 적용 |
| | A-2 | 1.72%를 단일관세율로 적용하되 기존 관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 유지 |
| | A-3 | 기존 개별 관세율을 30.2%(= 441/632)씩 인하 |
| 시나리오 B | B-1 | 기존 평균관세율을 55.8%(= 279/632) 감축한 1.09%를 전체 산업에 단일관세율 적용 |
| | B-2 | 1.09%를 단일관세율로 적용하되 기존 관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 유지 |
| | B-3 | 기존 개별 관세율을 55.8%(= 279/632)씩 감축 |

- 주: 1.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논의되는 감축폭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농림수산물과 식료품의 관세율은 앞서 분석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함.
 2. 모형에서 사용된 2003년도 농림수산물과 식료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2.46%임.
 3. 현재 중심관세율을 8%를 시나리오 A처럼 30.2%(=441/632) 감축할 경우 5.58%가 되며, 시나리오 B처럼 55.8%(=279/632) 감축할 경우 3.53%가 됨.

나. 분석 결과

1) 관세율 수준과 후생변화

앞서 DDA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A는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현재보다 30.2% 인하하는

시나리오였으며 시나리오 B는 시나리오 A보다 관세 인하폭을 늘려 기존 관세율을 55.8% 인하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에 의한 대표적인 가계의 후생 증가를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 A에서 후생 증가는 0.213~0.268%였고, 시나리오 B에서의 후생 증가는 시나리오 A보다 더 커서 0.401~0.404%였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나리오 B에서의 관세율 인하폭이 시나리오 A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그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A-1과 B-1은 전체 산업에 대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시나리오 A-3과 B-3은 기존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후생 증가 수준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A-3과 B-3의 후생 증가는 각각 0.216%와 0.403%로 시나리오 A-1과 B-1의 후생 증가 0.213%와 0.401%보다 아주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균일화하는 균등관세율 체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의 후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관세율이 인상되는 산업보다는 관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이 더 많고 관세 인하폭도 더 커서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 변화라는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화가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보

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시나리오 A-2와 B-2는 기존 관세율이 단일관세율 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의 후생 증가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A-2와 B-2의 후생 증가는 각각 0.268%와 0.404%이다. 이러한 후생 증가는 기존 관세율을 단일관세율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A-1과 B-1의 후생 증가보다 더 크다. 이는 단일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관세율 수준이 더 낮기 때문이다.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율이 인상되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관세율이 55.8%로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 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단일관세율 수준까지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후생 수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시나리오 A-1에 의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은 광산품, 인쇄, 출판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제1차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다. 이 중 광산품은 기존 관세율이 1.71%로 단일관세율 1.72%와는 불과 0.01%p의 차이가 있어 관세 인상폭이 가장 적었고,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은 기존 관세율이 0.58%로 1.14%p 관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가 거의 2배 정도 인상되어 관세율이 가장 크게 인상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기존 평균관세율을 55.8% 낮추어 1.09%의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시나리오 B-1의 경우에는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은 인쇄, 출판 및 복제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뿐이었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기존 관세율도 1.05%로 단일관세율 1.09%와는 별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의 관세율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런 관세율 변화로 인해 시나리오 B에 의한 후생 변화가 개별 시나리오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8> 시나리오별 관세율 수준

(단위: %)

| | 기존 실적세율 | 시나리오 A | | | 시나리오 B | | |
|-------------|------------|--------|-------|-------|--------|-------|-------|
| | | A-1 | A-2 | A-3 | B-1 | B-2 | B-3 |
| 농림수산물 | 8.60 | 8.60 | 8.60 | 8.60 | 8.60 | 8.60 | 8.60 |
| 광산물 | 1.71 | 1.72 | 1.71 | 1.19 | 1.09 | 1.09 | 0.75 |
| 음식료품 | 14.90 | 14.90 | 14.90 | 14.90 | 14.90 | 14.90 | 14.90 |
| 섬유 및 가죽제품 | 6.23 | 1.72 | 1.72 | 4.35 | 1.09 | 1.09 | 2.75 |
| 목재 및 종이제품 | 3.15 | 1.72 | 1.72 | 2.20 | 1.09 | 1.09 | 1.39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58 | 1.72 | 0.58 | 0.41 | 1.09 | 0.58 | 0.26 |
| 석유 및 석탄제품 | 1.52 | 1.72 | 1.52 | 1.06 | 1.09 | 1.09 | 0.67 |
| 화학제품 | 4.02 | 1.72 | 1.72 | 2.81 | 1.09 | 1.09 | 1.78 |
| 비금속광물제품 | 5.37 | 1.72 | 1.72 | 3.75 | 1.09 | 1.09 | 2.37 |
| 제1차 금속제품 | 1.48 | 1.72 | 1.48 | 1.04 | 1.09 | 1.09 | 0.66 |
| 금속제품 | 4.43 | 1.72 | 1.72 | 3.09 | 1.09 | 1.09 | 1.95 |
| 일반기계 | 3.95 | 1.72 | 1.72 | 2.7 | 1.09 | 1.09 | 1.74 |
| 전기 및 전자기기 | 1.05 | 1.72 | 1.05 | 0.73 | 1.09 | 1.05 | 0.46 |
| 정밀기기 | 3.24 | 1.72 | 1.72 | 2.26 | 1.09 | 1.09 | 1.43 |
| 수송장비 | 3.34 | 1.72 | 1.72 | 2.33 | 1.09 | 1.09 | 1.47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51 | 1.72 | 1.72 | 3.85 | 1.09 | 1.09 | 2.43 |
| 가계의 후생증가 | 기준 | 0.213 | 0.268 | 0.216 | 0.401 | 0.404 | 0.403 |

<표 III-19> 시나리오별 관세 변화율

(단위: %)

| | 시나리오 A | | | 시나리오 B | | |
|-------------|--------|--------|--------|--------|--------|--------|
| | A-1 | A-2 | A-3 | B-1 | B-2 | B-3 |
| 광산품 | 0.58 | 0.00 | -30.41 | -36.26 | -36.26 | -56.14 |
| 섬유 및 가죽제품 | -72.39 | -72.39 | -30.18 | -82.50 | -82.50 | -55.86 |
| 목재 및 종이제품 | -45.40 | -45.40 | -30.16 | -65.40 | -65.40 | -55.87 |
| 인쇄, 출판 및 복제 | 196.55 | 0.00 | -29.31 | 87.93 | 0.00 | -55.17 |
| 석유 및 석탄제품 | 13.16 | 0.00 | -30.26 | -28.29 | -28.29 | -55.92 |
| 화학제품 | -57.21 | -57.21 | -30.10 | -72.89 | -72.89 | -55.72 |
| 비금속광물제품 | -67.97 | -67.97 | -30.17 | -79.70 | -79.70 | -55.87 |
| 제1차 금속제품 | 16.22 | 0.00 | -29.73 | -26.35 | -26.35 | -55.41 |
| 금속제품 | -61.17 | -61.17 | -30.25 | -75.40 | -75.40 | -55.98 |
| 일반기계 | -56.46 | -56.46 | -31.65 | -72.41 | -72.41 | -55.95 |
| 전기 및 전자기기 | 63.81 | 0.00 | -30.48 | 3.81 | 0.00 | -56.19 |
| 정밀기기 | -46.91 | -46.91 | -30.25 | -66.36 | -66.36 | -55.86 |
| 수송장비 | -48.50 | -48.50 | -30.24 | -67.37 | -67.37 | -55.9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68.78 | -68.78 | -30.13 | -80.22 | -80.22 | -55.90 |

2) 국내생산 및 수출입 변화

가) 국내생산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새로운 관세율은 국내생산 및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관세율 구조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재원을 새롭게 배분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관세율 구조 변화로 국내생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는 산업은 가구 및 기타제조업 산업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내생산 감소가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관세율 인하율은 섬유 및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과 유사하지만 국산재-수입재 대체탄력성이 7.21%로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는 곧 수입재의 증가를 유도하여 그 만큼 국산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추후 수입 변화를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생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산업으로는 수송 장비산업을 꼽을 수 있다. 수송 장비산업은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일정률로 관세를 감축하는 경우보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할 때 국내생산 증가가 더 컸다. 관세율 인하로 수입도 증가하지만 수출도 함께 증가하여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관세율이 인상(시나리오 A-1, B-1), 인하(시나리오 A-3, B-3), 혹은 현재와 같은 수준(시나리오 A-2, B-2)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전기 및 전자기기의 국내생산은 세 가지 다른 관세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두 증가한다. 국내생산 증가율도 수송장비 다음으로 큰 폭이었다. 또한 관세율을 인하 혹은 현재로 유지할 경우의 국내생산이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B에서 전기 전자기기 산업은 모든 산업의 관세율이 동일하게 인하되는 경우(시나리오 B-3)의 국내생산 증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관세율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시나리오 B-2), 그리고 관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시나리오 B-1)의 국내생산 증가가 가장 적었다.

이 밖에 일정한 수준의 균등관세율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시나리오 A-1에서 큰 폭으로 관세율 인하가 발생하는 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의 국내생산은 감소하지만, 보다 완만한 수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시나리오 A-3의 경우에는 국내생산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재와의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나 그 결과가 국내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Ⅲ.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89

<표 III-20>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변화율

(단위: %)

| | 시나리오 A | | | 시나리오 B | | |
|--------------|--------|-------|-------|--------|-------|-------|
| | A-1 | A-2 | A-3 | B-1 | B-2 | B-3 |
| 농림수산물 | 0.05 | 0.03 | 0.05 | 0.09 | 0.09 | 0.09 |
| 광산품 | 0.10 | 0.08 | 0.14 | 0.24 | 0.24 | 0.27 |
| 음식료품 | 0.07 | 0.06 | 0.07 | 0.12 | 0.12 | 0.13 |
| 섬유 및 가죽제품 | -0.86 | -1.18 | -0.57 | -1.25 | -1.26 | -1.07 |
| 목재 및 종이제품 | -0.16 | -0.24 | -0.07 | -0.20 | -0.22 | -0.13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43 | 0.10 | -0.01 | 0.27 | 0.13 | -0.02 |
| 석유 및 석탄제품 | 0.08 | 0.05 | 0.20 | 0.30 | 0.30 | 0.37 |
| 화학제품 | -0.03 | -0.02 | 0.05 | 0.05 | 0.05 | 0.10 |
| 비금속광물제품 | -0.00 | 0.07 | 0.14 | 0.16 | 0.17 | 0.25 |
| 제1차금속제품 | 0.39 | 0.41 | 0.20 | 0.50 | 0.51 | 0.38 |
| 금속제품 | 0.11 | 0.15 | 0.16 | 0.26 | 0.26 | 0.29 |
| 일반기계 | -0.08 | -0.05 | -0.01 | -0.05 | -0.05 | -0.01 |
| 전기 및 전자기기 | 0.30 | 0.81 | 0.61 | 0.95 | 1.00 | 1.15 |
| 정밀기기 | -0.44 | -0.31 | -0.23 | -0.55 | -0.54 | -0.42 |
| 수송장비 | 1.69 | 1.69 | 0.84 | 2.16 | 2.16 | 1.60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4.15 | -4.35 | -1.76 | -4.93 | -4.94 | -3.34 |
| 전력, 가스 및 수도 | 0.02 | 0.03 | 0.10 | 0.13 | 0.13 | 0.18 |
| 건설 | 0.15 | 0.19 | 0.15 | 0.27 | 0.28 | 0.27 |
| 도소매 | 0.07 | 0.08 | 0.06 | 0.11 | 0.11 | 0.10 |
| 음식점 및 숙박 | 0.04 | 0.02 | 0.01 | 0.04 | 0.03 | 0.02 |
| 운수 및 보관 | 0.16 | 0.12 | 0.14 | 0.28 | 0.27 | 0.26 |
| 통신 및 방송 | 0.01 | 0.01 | 0.01 | 0.02 | 0.02 | 0.01 |
| 금융 및 보험 | 0.03 | 0.02 | 0.02 | 0.04 | 0.04 | 0.03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7 | 0.07 | 0.05 | 0.10 | 0.10 | 0.09 |
| 공공행정 및 국방 | -1.22 | -1.57 | -1.27 | -2.34 | -2.36 | -2.37 |
| 교육 및 보건 | -0.16 | -0.21 | -0.18 | -0.33 | -0.33 | -0.34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11 | 0.11 | 0.08 | 0.17 | 0.17 | 0.15 |
| 기타 | -0.09 | -0.13 | -0.11 | -0.19 | -0.19 | -0.20 |

섬유 및 가죽제품은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관세율 인하 폭이 가장 큰 산업이다. 이러한 큰 폭의 관세 인하로 인하여 섬유 및 가죽제품의 국내생산 수준은 가구 및 기타제조업 다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큰 폭의 관세율 인하는 수입재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그 만큼 국내생산은 감소시킨다.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입 증가율도 2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업 중에서 공공행정 및 국방에서의 국내생산 수준이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관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수입이 감소하여 그 만큼 정부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 및 보건 업종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나) 수입 변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수입 증가가 가장 크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서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19~23% 수준이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관세 인하율도 큰 편이지만, 국내생산도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고 국산재-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서 관세율 인하폭이 가장 큰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수입 증가가 6~8%를 상회하여 다른 산업들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인하폭이 크고 국내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상한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A-1과 B-1)에서 관세율이 가장 크게 인상되는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의 수입이 예상대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 대해 동일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 목재 및 종이

Ⅲ.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91

제품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시나리오 A-3의 경우 목재 및 종이제품의 수입 감소가 -0.05%로 아주 미미하다. 수입 증가가 큰 산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가구 및 기타제조업 8.34%, 섬유 및 가죽제품 2.97%, 수송장비산업 1.49%이며, 나머지 산업들의 수입 증가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 관세율을 낮출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수송장비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수입 증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표 III-21> 시나리오별 수입 변화율

(단위: %)

| | 시나리오 A | | | 시나리오 B | | |
|--------------|--------|-------|-------|--------|-------|-------|
| | A-1 | A-2 | A-3 | B-1 | B-2 | B-3 |
| 농림수산물 | -0.02 | 0.01 | 0.07 | 0.08 | 0.08 | 0.13 |
| 광산물 | 0.09 | 0.07 | 0.17 | 0.27 | 0.27 | 0.32 |
| 음식료품 | 0.00 | 0.03 | 0.08 | 0.09 | 0.09 | 0.14 |
| 섬유 및 가죽제품 | 6.64 | 6.87 | 2.97 | 7.96 | 7.96 | 5.57 |
| 목재 및 종이제품 | -0.19 | -0.25 | -0.05 | -0.20 | -0.22 | -0.11 |
| 인쇄, 출판 및 복제 | -7.19 | -1.22 | 0.62 | -3.91 | -1.37 | 1.15 |
| 석유 및 석탄제품 | -0.18 | 0.01 | 0.16 | 0.08 | 0.08 | 0.29 |
| 화학제품 | 0.69 | 0.75 | 0.44 | 0.99 | 0.99 | 0.82 |
| 비금속광물제품 | 1.57 | 1.69 | 0.80 | 1.99 | 2.00 | 1.49 |
| 제1차금속제품 | 0.18 | 0.35 | 0.36 | 0.56 | 0.57 | 0.67 |
| 금속제품 | 1.81 | 1.89 | 0.97 | 2.35 | 2.35 | 1.80 |
| 일반기계 | 1.21 | 1.25 | 0.68 | 1.62 | 1.62 | 1.28 |
| 전기 및 전자기기 | 0.16 | 0.55 | 0.45 | 0.66 | 0.69 | 0.85 |
| 정밀기기 | 0.70 | 0.76 | 0.52 | 1.09 | 1.09 | 0.98 |
| 수송장비 | 2.17 | 2.22 | 1.49 | 3.23 | 3.23 | 2.80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19.28 | 19.74 | 8.34 | 23.19 | 23.21 | 15.94 |

다) 수출 변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은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수출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송장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수송장비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단일관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2.9~3.7% 정도이고, 일정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 1.5~2.8% 정도로 나타났다. 수송장비 산업은 관세율 체계 변화로 국내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내수재와 수출재 간의 전환탄력성도 낮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산업으로 모형 분석 결과 제시되었다.

전체 산업에 단일관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시나리오 A-1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유일한 산업은 정밀기기 산업이다. 정밀기기 산업은 내수재와 수출재 간의 전환탄력성은 매우 낮아 국내생산 감소가 수출 감소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시나리오 A-1보다 더 낮은 단일관세율 체계를 가정한 시나리오 B-1에서는 정밀기기 산업과 함께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수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 감소율은 -0.3~-0.5%로 크지 않다. 이들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에서는 수출이 증가하였다. 관세율 인하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출도 증가한 결과이다. 시나리오 A-1과 A-2에서 수출 증가율이 1%를 넘는 산업은 수송장비 산업을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가율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나리오 B-1과 B-2에서 수출 증가율이 1%를 넘는 산업은 수송장비 산업과 함께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었다. 비금속 광물제품의 경우에는 내수재와 수출재 간의 전환탄력성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 증가가 수출 증가로 연결된 결과로 생각된다.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93

<표 III-22> 시나리오별 수출 변화율

(단위: %)

| | 시나리오 A | | | 시나리오 B | | |
|--------------|--------|-------|-------|--------|-------|-------|
| | A-1 | A-2 | A-3 | B-1 | B-2 | B-3 |
| 농림수산물 | 0.16 | 0.09 | 0.01 | 0.11 | 0.11 | 0.01 |
| 광산물 | 0.44 | 0.17 | -0.01 | 0.26 | 0.25 | -0.03 |
| 음식료품 | 0.10 | 0.08 | 0.07 | 0.14 | 0.14 | 0.12 |
| 섬유 및 가죽제품 | 0.02 | -0.38 | -0.27 | -0.33 | -0.34 | -0.52 |
| 목재 및 종이제품 | 0.39 | 0.20 | 0.12 | 0.37 | 0.34 | 0.21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91 | 0.47 | 0.09 | 0.68 | 0.54 | 0.15 |
| 석유 및 석탄제품 | 0.08 | 0.05 | 0.20 | 0.30 | 0.30 | 0.37 |
| 화학제품 | 0.14 | 0.13 | 0.13 | 0.26 | 0.26 | 0.25 |
| 비금속광물제품 | 0.75 | 0.65 | 0.59 | 1.20 | 1.20 | 1.09 |
| 제1차금속제품 | 0.40 | 0.42 | 0.26 | 0.58 | 0.58 | 0.48 |
| 금속제품 | 0.51 | 0.48 | 0.40 | 0.82 | 0.81 | 0.75 |
| 일반기계 | 0.38 | 0.40 | 0.24 | 0.54 | 0.54 | 0.44 |
| 전기 및 전자기기 | 0.35 | 0.98 | 0.73 | 1.13 | 1.17 | 1.37 |
| 정밀기기 | -0.44 | -0.31 | -0.23 | -0.55 | -0.54 | -0.42 |
| 수송장비 | 2.94 | 2.91 | 1.47 | 3.74 | 3.74 | 2.78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2.57 | -2.97 | -1.15 | -3.20 | -3.22 | -2.23 |

WTO DDA협상 결과에 의해 전체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세율은 8%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실적세율도 기본관세율의 중심세율이 8%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WTO DDA협상 결과 전반적인 관세율이 점진적(30.2%)으로 인하되는 시나리오 A의 경우 중심세율 8%는

5.58%로, 급진적(55.8%)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시나리오 B의 경우 중심세율 8%는 3.53%로 낮아지게 된다. 즉, 점진적인 시나리오 A의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으로 5~6%, 보다 급진적인 관세율 인하가 합의될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세율로 3~4%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5월 말 기준으로 WTO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관세율 감축 지수(스위스 공식 계수)를 7~9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²⁷⁾. 이 수치대로 DDA협상이 타결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중심관세율 수준은 5%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DDA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인하에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하였던 관세율 인하시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중심관세율 수준을 5%로 낮추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세율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 재배분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7) 관세율이 30.2% 인하되는 시나리오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 공식 계수 10을 상정한 경우이고 관세 인하율이 55.8%인 경우는 스위스 공식 계수 5를 가정한 경우이다.

III. 관세체계변화의 효과분석 95

<표 III-23>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율(중심세율 5%)

(단위: %)

| | 생산 | | | 수입 | | | 수출 |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농림수산물 | 0.058 | 0.047 | 0.060 | 0.010 | 0.023 | 0.087 | 0.147 | 0.093 | 0.009 |
| 광산물 | 0.136 | 0.134 | 0.180 | 0.138 | 0.140 | 0.216 | 0.387 | 0.220 | -0.014 |
| 음식료품 | 0.082 | 0.077 | 0.085 | 0.030 | 0.043 | 0.094 | 0.111 | 0.097 | 0.080 |
| 섬유 및 가죽제품 | -0.967 | -1.191 | -0.709 | 7.012 | 7.158 | 3.699 | -0.078 | -0.350 | -0.339 |
| 목재 및 종이제품 | -0.169 | -0.239 | -0.084 | -0.189 | -0.246 | -0.067 | 0.383 | 0.246 | 0.145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386 | 0.110 | -0.012 | -6.269 | -1.288 | 0.766 | 0.845 | 0.499 | 0.106 |
| 석유 및 석탄제품 | 0.144 | 0.136 | 0.247 | -0.107 | -0.073 | 0.193 | 0.144 | 0.136 | 0.247 |
| 화학제품 | -0.005 | -0.005 | 0.064 | 0.775 | 0.813 | 0.547 | 0.173 | 0.159 | 0.167 |
| 비금속광물제품 | 0.045 | 0.094 | 0.170 | 1.690 | 1.769 | 0.995 | 0.877 | 0.800 | 0.736 |
| 제차금속제품 | 0.421 | 0.442 | 0.252 | 0.289 | 0.372 | 0.447 | 0.453 | 0.466 | 0.319 |
| 금속제품 | 0.149 | 0.161 | 0.194 | 1.965 | 2.024 | 1.200 | 0.594 | 0.513 | 0.503 |
| 일반기계 | -0.071 | -0.066 | -0.005 | 1.324 | 1.350 | 0.850 | 0.428 | 0.417 | 0.297 |
| 전기 및 전자기기 | 0.486 | 0.854 | 0.762 | 0.304 | 0.579 | 0.563 | 0.568 | 1.025 | 0.911 |
| 정밀기기 | -0.475 | -0.377 | -0.279 | 0.806 | 0.847 | 0.648 | -0.475 | -0.377 | -0.279 |
| 수송장비 | 1.823 | 1.791 | 1.047 | 2.469 | 2.509 | 1.858 | 3.163 | 3.100 | 1.826 |
|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 -4.372 | -4.534 | -2.201 | 20.381 | 20.735 | 10.444 | -2.747 | -3.073 | -1.447 |
| 전력, 가스 및 수도 | 0.052 | 0.059 | 0.119 | -0.136 | -0.052 | -0.091 | 0.388 | 0.257 | 0.495 |
| 건설 | 0.184 | 0.209 | 0.187 | -0.299 | -0.215 | 0.006 | 5.816 | 5.138 | 2.173 |
| 도소매 | 0.084 | 0.086 | 0.068 | -0.038 | 0.088 | 0.335 | 0.118 | 0.085 | -0.007 |
| 음식점 및 숙박 | 0.038 | 0.020 | 0.011 | -0.202 | -0.117 | 0.111 | 0.166 | 0.093 | -0.043 |
| 운수 및 보관 | 0.195 | 0.160 | 0.175 | -0.214 | -0.109 | 0.013 | 0.308 | 0.234 | 0.220 |
| 통신 및 방송 | 0.013 | 0.012 | 0.010 | -0.051 | 0.048 | 0.281 | 0.041 | -0.003 | -0.106 |
| 금융 및 보험 | 0.028 | 0.025 | 0.020 | -0.049 | 0.063 | 0.313 | 0.052 | 0.014 | -0.071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75 | 0.078 | 0.057 | -0.013 | 0.095 | 0.321 | 0.111 | 0.071 | -0.052 |
| 공공행정 및 국방 | -1.535 | -1.754 | -1.580 | -1.836 | -1.964 | -1.502 | -1.403 | -1.662 | -1.614 |
| 교육 및 보건 | -0.211 | -0.240 | -0.227 | -0.572 | -0.509 | -0.197 | -0.052 | -0.122 | -0.240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126 | 0.127 | 0.103 | -0.268 | -0.183 | 0.092 | 0.293 | 0.258 | 0.108 |
| 기타 | -0.115 | -0.147 | -0.133 | -0.736 | -0.682 | -0.301 | 0.141 | 0.073 | -0.065 |

<표 III-24> 시나리오별 국내생산 수준 변화율
(중심세율 5%, 농산물 20%인하)

(단위: %)

| | 생산 | | | 수입 | | | 수출 |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농림수산물 | 0.247 | 0.237 | 0.249 | 0.764 | 0.777 | 0.840 | 0.392 | 0.338 | 0.253 |
| 광산물 | 0.157 | 0.155 | 0.201 | 0.159 | 0.161 | 0.237 | 0.415 | 0.248 | 0.015 |
| 음식료품 | 0.392 | 0.388 | 0.394 | 1.085 | 1.099 | 1.147 | 0.463 | 0.449 | 0.431 |
| 섬유 및 가죽제품 | -0.796 | -1.021 | -0.540 | 6.947 | 7.094 | 3.637 | 0.124 | -0.150 | -0.138 |
| 목재 및 종이제품 | -0.111 | -0.180 | -0.026 | -0.137 | -0.195 | -0.016 | 0.480 | 0.343 | 0.243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389 | 0.113 | -0.009 | -6.354 | -1.377 | 0.673 | 0.873 | 0.528 | 0.134 |
| 석유 및 석탄제품 | 0.169 | 0.161 | 0.272 | -0.084 | -0.049 | 0.217 | 0.169 | 0.161 | 0.272 |
| 화학제품 | 0.031 | 0.031 | 0.100 | 0.801 | 0.839 | 0.573 | 0.213 | 0.199 | 0.207 |
| 비금속광물제품 | 0.060 | 0.109 | 0.186 | 1.701 | 1.780 | 1.006 | 0.911 | 0.834 | 0.771 |
| 자동차금속제품 | 0.438 | 0.458 | 0.269 | 0.304 | 0.387 | 0.463 | 0.471 | 0.483 | 0.337 |
| 금속제품 | 0.173 | 0.185 | 0.218 | 1.981 | 2.041 | 1.217 | 0.634 | 0.552 | 0.543 |
| 일반기계 | -0.071 | -0.067 | -0.005 | 1.313 | 1.339 | 0.838 | 0.436 | 0.425 | 0.306 |
| 전기 및 전자기기 | 0.500 | 0.869 | 0.776 | 0.313 | 0.588 | 0.572 | 0.586 | 1.043 | 0.929 |
| 장말기기 | -0.467 | -0.368 | -0.271 | 0.800 | 0.841 | 0.642 | -0.467 | -0.368 | -0.271 |
| 수송장비 | 1.848 | 1.815 | 1.071 | 2.445 | 2.485 | 1.833 | 3.207 | 3.144 | 1.870 |
|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 -4.300 | -4.462 | -2.127 | 20.274 | 20.628 | 10.343 | -2.616 | -2.942 | -1.313 |
| 전력, 가스 및 수도 | 0.064 | 0.072 | 0.132 | -0.117 | -0.033 | -0.072 | 0.390 | 0.259 | 0.498 |
| 건설 | 0.187 | 0.212 | 0.191 | -0.313 | -0.229 | -0.008 | 6.017 | 5.338 | 2.374 |
| 도소매 | 0.108 | 0.109 | 0.091 | -0.026 | 0.100 | 0.347 | 0.145 | 0.111 | 0.020 |
| 음식점 및 숙박 | 0.220 | 0.202 | 0.192 | -0.466 | -0.380 | -0.154 | 0.587 | 0.514 | 0.377 |
| 운수 및 보관 | 0.224 | 0.189 | 0.204 | -0.203 | -0.098 | 0.023 | 0.342 | 0.268 | 0.254 |
| 통신 및 방송 | 0.016 | 0.015 | 0.012 | -0.050 | 0.048 | 0.281 | 0.044 | 0.001 | -0.103 |
| 금융 및 보험 | 0.037 | 0.035 | 0.029 | -0.051 | 0.061 | 0.310 | 0.065 | 0.027 | -0.058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86 | 0.089 | 0.068 | -0.003 | 0.105 | 0.330 | 0.123 | 0.083 | -0.040 |
| 공공행정 및 국방 | -1.910 | -2.129 | -1.955 | -2.241 | -2.369 | -1.908 | -1.765 | -2.023 | -1.975 |
| 교육 및 보건 | -0.286 | -0.315 | -0.302 | -0.679 | -0.616 | -0.304 | -0.114 | -0.183 | -0.301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0.133 | 0.133 | 0.110 | -0.299 | -0.213 | 0.061 | 0.315 | 0.280 | 0.131 |
| 기타 | -0.116 | -0.148 | -0.134 | -1.067 | -1.012 | -0.632 | 0.276 | 0.209 | 0.071 |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곧 이은 전쟁으로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확보에 우선권을 두고 실행되었으며, 전후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산업 지향적 관세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관세율 체계도 산업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을 지향함과 동시에 중심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지금보다 낮은 관세율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즉,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관세율 구조 변화를 통해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개별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에서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경우 대표적인 가계로 표현되는 후생수준은 증가하였다. 여기서 차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란 현실적인 정책적 제약조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최적관세율을 도출하여 나타나는 관세율 구조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현재의 관세율 체계를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이행시킬 경우 차등관세율 체계가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다.

최적관세율 체계로 제시된 차등관세율 체계는 현재의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광산품, 목재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세화가 제시되었고, 석유 및 석탄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비금속광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상이 제시되었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만이 기존과 유사한 관세율 수준을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장비와 정밀기기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무세화를 비롯해서 큰 폭의 관세율 변화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46%에 불과하였다. 즉, 모형에 의해 나타난 최적관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별로 대폭적인 관세율 체계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후생 증대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자원배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이행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최적관세율 체계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하(약 86%)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 대폭 인상(430%)을 들 수 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섬유 및 가죽제품에 대해 중심세율 8%에서 벗어나 13~1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적세율도 공산품 중에서 가장 높은 6.2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약 86% 정도 대폭 인하하여 새로운 실적세율이 0.9~1.3% 수준으로 감축되면 섬유산업이 이처럼 급격한 관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WTO 양허수준까지 대폭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섬유산업의 관세율은 낮추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ITA협정으로 이미 일부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추진되었고, 향후 WTO DDA협상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무세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관세율을 WTO 양허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를 도출한 결과 관세율 체계의 변화로 얻어지는 가계의 후생 증대는 0.038%로 나타났다. 현실적 제약이 추가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그 만큼 가계의 후생 증대도 적어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 증대는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 비용을 감안하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될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관세율이 무세가 되어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유사한 관세율 수준이 유지되는 수송장비의 경우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관세율 체계 변화로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관세율에 대해 현실적 제약을 도입할 경우 국내생산 및 수출입이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DDA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보다 중립적인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의 경제적 효과도 살펴보았다. WTO DDA협상에서 제시될 수 있는 관세율 인하폭을 감안하여 관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나리오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단일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때보다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가 아주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균일화하는 단일관세율 체계로 이동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도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산업의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후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 즉,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보다는 관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이 더 많고 관세 인하폭도 더 커서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후생 변화 측면에서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관세율을 일정한 감축률로 인하하는 경우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인해 관세가 인상되는 산업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산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의 변화가 전체 산업을 동일하게 감축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면서 개별 산업별로 관세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단일관세율 체계로 전환하거나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송장비 산업은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도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은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에서 서로 다른 대체탄력성을 사용한 경우에도 무세가 제시되었고, 그 결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관세율 체계 혹은 현재의 중심관세율 수준을 낮출 경우에도 급격한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향후 가구 및 기타 제조업분야의 관세율을 점차 인하시키면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의 자원이 다른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차등관세율 체계, 단일관세율 구조 그리고 중심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차등

관세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관세율을 크게 변경시켜야 하지만, 그 결과에 의한 후생 증대도 크지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경우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겠다. 단일관세율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중심 관세율 수준을 일정 비율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어 품목별로 관세율이 인하 혹은 인상되는 분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정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심관세율 구조 유지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런 결론에 의해 WTO DDA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세율은 8%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3년 산업연관표의 실적세율도 기본관세율의 중심세율이 8% 수준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WTO DDA협상 결과 전반적인 관세율이 점진적(30.2%)으로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5.58%로, 급진적(55.8%)으로 관세율이 인하할 경우 중심세율 8%는 3.53%로 낮아지게 된다. 즉, 점진적인 경우 새로운 중심관세율 수준으로 5~6%, 보다 급진적인 관세율 인하가 합의될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세율로 3~4%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2008년 5월 말 기준으로 WTO DDA협상에서 선진국의 관세율 감축 지수(스위스 공식 계수)를 7~9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 수치대로 DDA협상이 타결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중심관세율 수준은 5%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DDA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인하에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하였던 관세율 인하시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중심관세율 수준을 5%로 낮추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세율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자원 재배분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균형 모형(CGE)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한 CGE 모형은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특히, 앞서 민감도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체탄력성의 가정에 따라 CGE 모형 분석 결과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CGE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다른 분석들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GE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관세율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중요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문석웅, 「산업별 국내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 CGE 모형에 의한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기법의 응용」,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8.
- 문석웅, 「산업별 국내재/수입재간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 CGE 모형에 의한 업데이트 시뮬레이션 기법의 응용」, 『경제학연구』, 제47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1999.
- 박상태, 「한국 관세율체계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 신동천,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4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1996.
-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1999.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이명현·성명재,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분석: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01-06,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재무부, 『관세율 개편 백서』, 재무부 관세국, 1989.
- 재무부, 『관세율정책운용실적 및 방향』, 재무부 관세국, 1991.
- 정재호, 「향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84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정재호·성명재·이명현,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책보고서 03-30,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정재호·박순찬, 『WTO DDA협상과 관세율 체계 변화 연구』, 정책보고서 06-08, 한국조세연구원, 2006.

- Balassa, B., "Tariffs Policy and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mimeo. World Bank, 1989.
- Corden, W. M., "Import Restrictions and Tariffs: A New Look at Australian Policy," *Economic Record*, 34, 1958.
- Corden, W. M., *The Theory of Protec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71.
- Decaluwe, B., A. Patry, L. Savard and E. Thorbecke, "Poverty Analysis within a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CREFA Working Paper 9909, 1999.
- Ederington, J. and Jenny Minier, "Tariff Uniformity and Growth," *Policy Reform*, Vol. 5(2), 2002.
- Gatti, R., "Corruption and Trade Tariffs, or a Case for Uniform tariff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216*, 1999.
- Harberger, A., "Principles of Taxation Applied to Developing Countries: What Have We Learned," in M. Boskin and C. McLure (eds), *World Tax Reform: Case Studi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an Francisco, ICS Press, 1990.
- Johnson, H. G., "Tariffs and Economic Development: Some Theoretical Issu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64.
- Macario, S., "Protectionism and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9, 1964.
- Panagariya, Arvind and Dani Rodrik, "Political-economy Arguments for a Uniform Tariff,"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4, No. 3, 1993.
- Wobst, P., "Structural Adjustment and Sectoral Shifts in Tanzania," IFPRI Research Report 117, 1999.

부 록

부 록 1 : 2000년 이후 관세율 조정 품목 및 관세수입

<부표 1-1> 2000년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

(단위: %)

| 품 명 | 관세율 | | 비 고 |
|----------------------|--------|-----------|------------------|
| | 기본(할당) | 조정 | |
| 1. 종량세 원료농산물: | | | |
| (고액(율) 적용) | | | |
| 당근 | 30 | 134원/kg | 채소(53.0) |
| 표고버섯 | 30 | 1,625원/kg | 과실 및 채소가공품(213) |
| 영지버섯 | 30 | 842원/kg | |
| 기타버섯 | 30 | 1,218원/kg | |
| 고사리 | 30 | 1,807원/kg | |
| 파 | 30 | 1,159원/kg | |
| 들깨 | 40 | 410원/kg | 유지작물(62.0) |
| 2. 가공식품 원료농산물 | | | |
|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 | | |
| · 전체·조각상 토마토 | 50(10) | 8 | 과실 및 채소가공품 |
| · 토마토 페이스트 | 8(5) | 5 | |
| · 기타 | 50(10) | 8 | |
| - 유채유 | | | |
| 해바라기씨유 | 25 | 10 |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601) |
| - 대두유 오일, 유박 | | | |
| 밀과 메슬린(기타) | 5(3) | 3 | 밀(663) |
| - 아몬드 | | | |
| 캐슈넛 | 30(8) | 8 | 식용임산물(30) |
| - 캐슈넛 | | | |
| 해즐넛 | 30 | 8 | 커피 및 차류(22) |
| - 해즐넛 | | | |
| | 30 | 8 | 식용임산물 |

<부표 1-1>의 계속

(단위: %)

| 품 명 | 관세율 | | 비 고 |
|----------------|--------|----|------------------|
| | 기본(할당) | 조정 | |
| 3. ITA 관련 원부자재 | | | |
| - 폴리실리콘 | 8) | 3 | 무기화합물(973) |
| - 블랭크마스크 | 8(6.5) | 3 | 사진용화학제품(433) |
| - 포토마스크 | 8(6.5) | 3 | 인쇄회로(262) |
| - 금속도금기 | 8 | 5 | 기타특수목적기계(2,047) |
| - 흑연도가니 | 8 | 3 | 내화용 요업(69) |
| - 석연도가니 | 8(4) | 3 | 산업용유리(234) |
| - 여과기 | 8 | 3 | 공기액체여과기(214) |
| - 납불탐재기 | 8(3.6) | 3 | 기타특수목적기계 |
| - 콘덴서지와 판지 | 8 | 3 | 기타종이제품(194) |
| - 진공펌프(기타) | 8 | 3 | 펌프 및 압축기(785) |
| - 건조기(기타) | 8 | 3 | 기타특수목적기계 |
| - 자외선 램프 | 8 | 3 | 전구 및 조명장치(134) |
| - 광학용품(기타) | 8 | 3 | 기타광학기기(449) |
| - 유량자동조절기 | 8 | 3 |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272) |
| 4. 세율불균형 시정 | | | |
| - 컴퓨터설계도 | 8 | 0 | 인쇄(42.9) |
| - 발전기용 내연엔진 | 8(4) | 4 | 엔진 및 터빈(757) |
| - 테입형 리드프레임 | 8(7.2) | 0 | 인쇄회로기관(296.0) |
| - 재생스테인플 섬유 | 8(4) | 4 | 재생섬유(71) |

자료: 재정경제부.

<부표 1-2> 2006년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

(단위: %)

①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세율인하[310개 품목]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 10단위수 | 비고 |
|----------------|------------|----|--------------|-----------|
| | 현행 (실행) | 개정 | | |
| 철광석과 그 정광 | 1(할0) | 0 | 6 | 제강용 |
| 망간광과 그 정광 | 1(할0) | 0 | 1 | 합금철용 |
| 동광과 그 정광 | 1(할0) | 0 | 1 | 전기동 |
| 니켈광과 그 정광 | 1 | 0 | 1 | 스테인리스강 |
| 코발트광과 그 정광 | 1 | 0 | 1 | 공구강용 |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 1 | 0 | 1 | 알루미늄제품 |
| 연광과 그 정광 | 1 | 0 | 1 | 빛대리 |
| 아연광과 그 정광 | 1(할0) | 0 | 1 | 아연도강판 |
| 주석광과 그 정광 | 1 | 0 | 1 | 주석도금강판 |
| 크롬광과 그 정광 | 1 | 0 | 1 | 스테인리스강 |
| 텅스텐광과 그 정광 | 1 | 0 | 3 | 필라멘트 |
|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정광 | 1 | 0 | 2 | 동위원소 |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 1 | 0 | 2 | 스테인리스강 |
| 티타늄광과 그 정광 | 1 | 0 | 3 | 합금첨가제 |
| 지르코늄과 그 정광 | 1 | 0 | 1 | 합금첨가제 |
| 니오븀광과 그 정광 | 1 | 0 | 1 | 화학촉매제 |
| 탄탈륨과 그 정광 | 1 | 0 | 1 | 합금첨가제 |
| 바나듐과 그 정광 | 1 | 0 | 1 | 공구강용 |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1 | 0 | 1 | 납합금 |
| 수은광과 그 정광 | 1 | 0 | 1 | 아말감용 |
|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 1 | 0 | 1 | 반도체 재료 |
| 베릴륨과 그 정광 | 1 | 0 | 1 | 전자·전기부품 |
| 비스머드광과 그 정광 | 1 | 0 | 1 | 합금첨가제 |
| 기타의 광과 그 정광 | 1 | 0 | 1 | 합금첨가제 |
| 인광석(천연인산칼슘) | 1 | 0 | 1 | 복합비료 |
| 귀금속과 그 정광 | 1 | 0 | 3 | 금, 은, 백금용 |
| 염 화 칼 륨 | 1 | 0 | 1 | 비료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 10단위수 | 비고 |
|----------------------|------------|----|--------------|---------|
| | 현행 (실행) | 개정 | | |
| 형 석 | 3 | 2 | 7 | 제강용 |
| 석 탄(유·무연탄) | 1 | 0 | 6 | 코크스, 연료 |
| 납 사 | 5(잡1, 할0) | 0 | 4 | 석유화학제품 |
| 천연가스액(NGL) | 5(잡1, 할0) | 0 | 4 | 납사대용품 |
| 액화석유가스(LPG) | 5(할1.5) | 3 | 2 | 운송용 |
| 천연가스(LNG) | 5(잡1) | 3 | 2 | 발전용 |
| 천 연 고 무 | 1(할0) | 0 | 9 | 타이어 |
| 원 피 | 2(할1) | 1 | 28 | 피혁제품 |
| 목 재 칩 | 2(할0) | 0 | 1 | 펄프 |
| 원 목 | 1~2(할0) | 0 | 42 | 합판 |
| 펄 프 | 2(양0) | 0 | 22 | 종이 |
| 고 지 | 2(양0) | 0 | 4 | 종이(재생) |
| 원 모 | 1(할0) | 0 | 21 | 모직물 등 |
| 원 면 | 1(할0) | 0 | 7 | 면직물 |
| 면 웨이스트 | 1(할0) | 0 | 3 | 면직물 |
| 선 철 | 2(할0) | 0 | 4 | 철강제품 |
| 직 접 환 원 철 | 1(할0) | 0 | 1 | 철강제품 |
| 철 스크랩 | 1(할0) | 0 | 7 | 철강제품 |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3(양0) | 0 | 12 | 철근, 강판 |
| 스테인리스강 반제품 | 3(양0) | 0 | 7 | 평판압연제품 |
|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 3(양0) | 0 | 6 | 평판압연제품 |
| 동의 매트와 시멘트동 | 1 | 0 | 2 | 전기동 |
| 조동 및 동 양극 | 2(양0) | 0 | 2 | 전기동 |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1(양0) | 0 | 1 | 전기동 |
| 니켈의 매트 | 1 | 0 | 1 | 니켈제품 |
| 산화니켈 (니켈함량 88%미만) | 1(할0) | 0 | 2 | 스테인리스강 |
| 니켈 스크랩 | 1 | 0 | 1 | 스테인리스강 |
| 알루미늄 피 | 3(할1) | 1 | 3 | 알루미늄 판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 10단위수 | 비고 |
|-------------|------------|------|--------------|-----------------------|
| | 현행 (실행) | 개정 | | |
| 알루미늄 빌레트 | 5(할3) | 3 | 1 | 알루미늄샤시 |
| 알루미늄 스크랩 | 1(할0) | 0 | 1 | 알루미늄 제품 |
| 조 연 | 2 | 1 | 1 | бат테리 |
| 연 스크랩 | 1 | 0 | 1 | бат테리 |
| 아연 스크랩 | 1 | 0 | 1 | 아연도강판 |
| 주석 스크랩 | 1 | 0 | 1 | 주석도금강판 |
| 텅스텐 스크랩 | 1 | 0 | 1 | 필라멘트 |
| 몰리브덴 스크랩 | 1 | 0 | 1 | 스테인리스강 |
| 탄탈륨 스크랩 | 1 | 0 | 1 | 전해콘덴서 |
| 마그네슘 스크랩 | 1 | 0 | 1 | 합금첨가제 |
| 전지또는축전지스크랩 | 1(5) | 0(3) | 4 | 재생 아연제품 등 |
| 오산화바나듐 | 3 | 2 | 1 | 페로바나듐 |
| 메탄올(메틸알콜) | 3 | 2 | 1 | 옥 탄 가 향 상 제 (MIBE) |
| 크실올(크실렌) | 5 | 3 | 2 | 폴리에스터 |
| 톨루올(톨루엔) | 5 | 3 | 2 | 용제용(반응원료) |
| 파라크실렌 | 5 | 3 | 1 | 폴리에스터 |
| 큐 멘 | 5 | 3 | 1 | 페놀,아세톤 |
| 벤 젠 | 5 | 3 | 2 | 나일론(카프로락탐) |
| 이소노닐알콜(INA) | 5 | 3 | 1 | PVC가소제(DINP) |
| 이소데실알콜(IDA) | 5 | 3 | 1 | PVC가소제(DIDP) |
| 산화몰리브덴 | 8(양5.5) | 3 | 1 | 스테인리스강 |
| 메틸에틸케톤(부탄온) | 8(양5.5) | 3 | 1 | 잉크 |
| 테레프탈산(TPA) | 8(양6.5) | 3 | 1 | 폴리에스터 |
| 트리에탄올아민 | 8(양6.5) | 3 | 1 | 합성세제 |
| 염화시아놀 | 8(양6.5) | 3 | 1 | 염료 |
| 카프로락탐 | 8(양6.5) | 3 | 1 | 나일론 섬유 |
| 탄산이나트륨(소다회) | 8 | 4 | 1 | 염료 고착용 |
| 원 유 | 5(할1) | 3 | 10 | 연료 |
| 휘 발 유 | 8(할5) | 5 | 5 | 자동차연료 |
| 등 유 | 8(할5) | 5 | 4 | 난방용 |
| 경 유 | 8(할5) | 5 | 3 | 디젤엔진용 |
| 중 유 | 8(할5) | 5 | 5 | 선박내연기관용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② 서울불균형 시정[112개 품목]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 | 사유 |
|-----------------------|------------|-----|-----|------------------------|
| | 현행 (실행) | 개정 | | |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 | 8 | 0 | 1 | 디지털카메라 (0%)와 형평 |
| 석영유리 | 8(할3, 4) | 3,4 | 5 | 블랭크마스크 (3%)와 형평 |
| 블랭크마스크(FPD용) | 8(할3) | 3 | 1 | 반도체용(3%)과 서울 형평 |
| 폴리이미드필름 | 8(할4) | 4 | 1 | 인쇄회로기관 (0%)과 형평 |
| 이오프로마이드 | 8(할0) | 0 | 1 | X선조영제(0%) 와 서울형평 |
| 이오파미돌 | 8(할0) | 0 | - | X선조영제(0%) 와 서울형평 |
| 이오페프롤 | 8(할0) | 0 | - | X선조영제(0%) 와 서울형평 |
| 복합구조칩 | 8(할0) | 0 | 1 | 직접회로(0%) 와 서울형평 |
| 금선(반도체용) | 8 | 3 | 1 | 여타 금선(3%) 과 형평 |
| 단판(무늬목) | 5(할3) | 3 | 32 | 합판용 단판 (3%)과 형평 |
| 산화텅스텐 | 8(할1) | 1 | 1 | 전방제품인텅스텐 분(3%)과서울형평 |
| 카세인·카세인산염 | 20(할8) | 8 | 2 | 커피프리마(8%) 와 서울형평 |
| 유채조유 | 10(할8) | 8 | 2 | 옥수수유(8%)와 서울형평 |
| 유채정제유 | 30(할10) | 10 | 4 | 옥수수유(8%)와 서울형평 |
| 페로망간 | 8 | 5 | 2 | 철강제품(0%)과 서울형평 |
| 페로실리코망간 | 8 | 5 | 1 | 상 동 |
| 페로몰리브덴 | 5 | 3 | 1 | 상 동 |
| 페로텅스텐 | 5 | 3 | 1 | 상 동 |
| 페로실리코텅스텐 | 5 | 3 | - | 상 동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 | 사유 |
|----------------------|------------|----|-----|---------------------------|
| | 현행 (실행) | 개정 | | |
| 페로디타늄 | 5 | 3 | 1 | 상 동 |
| 페로실리코디타늄 | 5 | 3 | - | 상 동 |
| 페로바나듐 | 5 | 3 | 1 | 상 동 |
| 페로니오븀 | 5 | 3 | 1 | 상 동 |
| 기타 합금철 | 5 | 3 | 2 | 상 동 |
| 코크스 *합금철/주물용할당3% | 5(할3) | 3 | 3 | 상 동 |
| 연의 괴 | 5 | 3 | 5 | 니켈괴(3%)등여타 비철 금속괴와세울형평 |
| 아연의 괴 | 5 | 3 | 5 | 상 동 |
| 전기동 | 5 | 3 | 1 | 상 동 |
| 텅스텐의 분 | 5 | 3 | 1 | 상 동 |
| 텅스텐의 괴 | 5 | 3 | 1 | 상 동 |
| 몰리브덴의 괴 | 5 | 3 | 1 | 상 동 |
| 몰리브덴의 분 | 5 | 3 | 1 | 상 동 |
| 마그네슘의 괴 | 5 | 3 | 2 | 상 동 |
| 볼베어링 (내경 100mm초과) | 13 | 8 | 1 | 여타 베어링 (8%)과 형평 |
| 비스머드와 그 제품 | 5 | 3 | 4 | 니켈괴(3%)등여타 비철 금속괴와세울형평 |
| 카드뮴과 그 제품 | 5 | 3 | 4 | 상 동 |
| 티타늄과 그 제품 | 5 | 3 | 3 | 상 동 |
| 지르코늄과 그 제품 | 5 | 3 | 4 | 상 동 |
| 망간과 그 제품 | 5 | 3 | 1 | 상 동 |
| 베릴륨과 그 제품 | 5 | 3 | 3 | 상 동 |
| 크로뮴과 그 제품 | 5 | 3 | 3 | 상 동 |
| 게르마늄과 그 제품 | 5 | 3 | 1 | 상 동 |
| 바나듐과 그 제품 | 5 | 3 | 1 | 상 동 |
| 탈륨과 그 제품 | 5 | 3 | 3 | 상 동 |
| 갈륨과 그 제품 | 5 | 3 | - | 상 동 |
| 하프늄과 그 제품 | 5 | 3 | - | 상 동 |
| 인듐과 그 제품 | 5 | 3 | - | 상 동 |
| 니오븀과 그 제품 | 5 | 3 | - | 상 동 |
| 레늄과 그 제품 | 5 | 3 | - | 상 동 |
| 서메트와 그 제품 | 5 | 3 | 1 | 상 동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③ 장기 할당관세 및 잠정관세 품목 기본관세율화[405개 품목]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수 | 용 도 |
|-----------------|--------|----|------|-------------|
| | 현행(실행) | 개정 | | |
| 백합인경 | 8(할4) | 4 | 1 | 백합뿌리 |
| 생 사 | 8(할3) | 3 | 6 | 견직물 |
| 단 판(합판용) | 5(할3) | 3 | - | 합판 |
| 무수암모니아 | 2(할1) | 1 | 1 | 요소 |
| 요 소(농업용) | 8(할2) | 2 | 1 | 비료 |
| 산화코발트 | 8(할4) | 4 | 2 | 2차전지 |
| 인조흑연 | 8(할4) | 4 | 1 | 2차전지 |
| 격 리 막 | 8(할4) | 4 | 2 | 2차전지 |
| 프레스케익 | 8(할4) | 4 | 1 | 염료(중간체) |
| H-산 | 5(할3) | 3 | 1 | 염료(중간체)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8(할3) | 3 | 1 | 폴리에스터 섬유 |
| 면 사 | 8(할4) | 4 | 2 | 면직물 |
| 재생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 | 4(할2) | 2 | 3 | 비스코스레이온 방적사 |
| 재생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8(할2) | 2 | 5 | 인견직물 |
| 완 두 콩 | 30(할0) | 0 | 1 | 배합사료용 |
| 밀 | 3(할0) | 0 | 1 | 배합사료용 |
| 알 팔 과 | 20(할1) | 1 | 2 | 배합사료용 |
| 밀 기 울 | 5(할2) | 2 | 1 | 배합사료용 |
| 면 실 박 | 5(할2) | 2 | 1 | 배합사료용 |
| 야 자 박 | 5(할2) | 2 | 1 | 배합사료용 |
| 팜 박 | 5(할2) | 2 | 1 | 배합사료용 |
| 듀럼종의 밀 | 5(잠3) | 3 | 1 | 가공식품 |
| 메 슬 린 | 5(잠3) | 3 | 1 | 가공식품 |
| 옥수수(기타의 것) | 5(잠3) | 3 | 2 | 팝콘 등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수 | 용 도 |
|--|----------|-----|------|-----------------------|
| | 현행(실행) | 개정 | | |
| 대 두(기타의 것) | 5(잠3) | 3 | 1 | 채유 및 탈지대두 박용 이외의 것 |
| 유 채 씨 | 30(잠10) | 10 | 2 | 유채유 |
| 암모니아수 | 5(잠2) | 2 | 1 | |
| 보증된 참조물질 | 5(잠 무세) | 불필요 | 1 | 해당품목없음 |
| 보증된 참조물질 | 5(잠1) | 불필요 | 1 | 해당품목없음 |
| 보증된 참조물질 | 8(잠5) | 불필요 | 1 | 해당품목없음 |
| 지르코늄과 그 제품 (핵연료 용기 제조용) | 5(잠 무세) | 0 | 4 | 핵연료 용기 |
| 제8444호 기계 또는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잠5) | 5 | 2 | 인조섬유기계 (방사기 등) |
| 소면기의 것 (가넷와이어를 제외) | 8(잠5) | 5 | 1 | 섬유기계 |
| 스핀들 플라이어 | 8(잠5) | 5 | 1 | 섬유기계 |
| 제7204호의 2,3 및 4의 나의 것 | 2(잠1) | 0 | 1 | 철스크랩 |
| 해체용 선박 | 2(잠1) | 0 | 1 | 철스크랩(0%)과 세울형평 |
|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 | 2(잠1) | 0 | 1 | 철스크랩(0%) 과 세울형평 |
| 농약원제 (Alra 등 260개) | 8(할2) | 2 | 55 | 농약제조용 |
| 냉동 삼겹살 | 50(양허25) | 25 | 293 | 농림수산물 |
|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품목(293개)에 대해 양허세율을 현실화하여 기본세율화] | | | | |

<부표 1-2>의 계속

(단위: %)

④ 종축·종자, 설탕, 영화용 필름 등 정책수요 반영 [66개 품목]

| 품 명 | 기본관세율 | | HSK수 | 용 도 |
|-------------|----------|-----|------|---------|
| | 현행(실행) | 개정 | | |
| 말 | 8(면세) | 0 | 1 | 종축용 |
| 토끼 | 8(면세) | 0 | 1 | 종축용 |
| 오리 | 20(면세) | 0 | 2 | 종축용 |
| 면양 | 8(면세) | 0 | 1 | 종축용 |
| 밍크 | 8(면세) | 0 | 1 | 종축용 |
| 여우 | 8(면세) | 0 | 0 | 종축용 |
| 유채씨 | 30(10면세) | 0 | 2 | 사료작물재배용 |
| 실뱀장어 | 10(면세) | 0 | 1 | 양식용 |
| 진주조개 | 20(면세) | 0 | 1 | 종패용 |
| 진주핵 | 8(면세) | 0 | 2 | 진주양식용 |
| 굴치패 | 5(면세) | 0 | 1 | 종패용 |
| 우렁쉥이 | 20(면세) | 0 | 1 | 종묘개량용 |
| 피조개 | 20(면세) | 0 | 1 | 종패용 |
| 뚝 | 10(면세) | 0 | 1 | 양식용 |
| 농어 | 10(면세) | 0 | 1 | 양식용 |
| 정제당(설탕) | 50(할40) | 30 | 2 | 가공식품용 |
| 영화용 필름(미촬영) | 8 | 6.5 | 44 | 영화용 |
| (노광한것) | 8 | 0 | 3 | |

자료: 재정경제부.

<부표 1-3> 관세의 재정기여도 추이

(단위: 억원, %)

| 연 도 | 국세수입 | 관세수입 | 국세수입 중 관세비중 |
|------|-----------|--------|----------------|
| 1983 | 100,507 | 14,632 | 14.56 |
| 1984 | 108,097 | 15,936 | 14.74 |
| 1985 | 118,764 | 15,661 | 13.19 |
| 1986 | 136,063 | 19,426 | 14.28 |
| 1987 | 163,437 | 26,965 | 16.50 |
| 1988 | 194,842 | 25,735 | 13.21 |
| 1989 | 212,341 | 21,176 | 9.97 |
| 1990 | 268,474 | 27,654 | 10.30 |
| 1991 | 303,198 | 34,355 | 11.33 |
| 1992 | 352,184 | 31,532 | 8.95 |
| 1993 | 392,606 | 28,859 | 7.35 |
| 1994 | 472,618 | 34,489 | 7.30 |
| 1995 | 567,746 | 46,332 | 8.16 |
| 1996 | 649,603 | 53,095 | 8.17 |
| 1997 | 699,277 | 57,976 | 8.29 |
| 1998 | 677,977 | 38,360 | 5.66 |
| 1999 | 756,850 | 46,873 | 6.19 |
| 2000 | 929,347 | 57,997 | 6.24 |
| 2001 | 957,928 | 59,234 | 6.18 |
| 2002 | 1,039,678 | 66,013 | 6.35 |
| 2003 | 1,146,642 | 68,473 | 5.97 |
| 2004 | 1,177,957 | 67,965 | 5.77 |
| 2005 | 1,274,657 | 63,177 | 4.96 |
| 2006 | 1,380,443 | 68,584 | 4.97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부 록 2 : 2003년 경제구조의 변화 및 특징

1. 산출액 변화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총 산출액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산출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산출액의 40.6%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 30.3%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농림어업 등의 생산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농림어업은 생산비중은 1990년 5.1%에서 2003년 2.3%로 약 절반 정도의 크기로 축소되었다.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1990년 49.6%에서 2003년 44.5%로 약 5.1%p 감소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총 산출액 중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여전히 제일 높다.

<부표 2-1> 총산출액 비중 변화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 농림어업 | 5.1 | 3.8 | 2.7 | 2.3 |
| 광업 | 0.5 | 0.4 | 0.2 | 0.2 |
| 제조업 | 49.6 | 47.6 | 46.5 | 44.5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12.2 | 11.6 | 9.4 | 10.4 |
| 서비스 | 30.3 | 34.1 | 39.0 | 40.6 |
| 기타 | 2.3 | 2.5 | 2.2 | 2.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2000년 서비스업 생산비중은 54.4%인 반면 제조업은 31.2%로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제조업과의 차이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서비스업의 생산비중 증가에 따른 제조업의 비중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을 소비재 업종, 기초소재 업종, 조립가공 업종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개별 산업별 산출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자. 제조업 중 소비재 업종의 생산비중 감소가 다른 2개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며, 그 중 특히 섬유 및 가죽제품 업종의 생산비중이 1990년 6.8%에서 2003년 2.6%로 절반 이상 비중이 축소되었다. 음식료품 업종도 1990년 7.0%에서 2003년 3.9%로 감소하였다.

반면, 조립가공 업종의 생산비중은 1990년 15.0%에 2003년 18.8%로 상승하였다. 조립가공 업종의 생산비중 증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생산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다만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의 생산비중이 2000년에 비해 2003년 1.0%p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립가공 업종의 생산비중도 2000년의 19.2%에 비해 2003년에 0.4%p 감소하였다. 기초소재 업종의 생산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 10여년간의 생산비중 변화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 업종의 생산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전자 및 전기기기 업종의 신장이 두드러진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개별 업종 생산비중 증가는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 및 숙박업종의 비중이 1990년대 0.8%에서 2000년 이후 3%의 생산비중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업종이 1990년 6.3%에서 2003년 10.4%로 크게 상승하였고, 교육 및 보건 업종도 역시 1990년 3.5%에서 2003년 6.4%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교육 및 보건 업종의 경우에는 2000년 생산비중이 5.2%에서 2003년 6.4%로 1.2%p나 증가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업 생산비중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 2-2> 산업별 산출액 비중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 농림어업 | 5.1 | 3.8 | 2.7 | 2.3 |
| 광업 | 0.5 | 0.4 | 0.2 | 0.2 |
| 제조업 | 49.6 | 47.6 | 46.5 | 44.5 |
| 소비재 업종 | 17.4 | 12.5 | 10.2 | 9.1 |
| 음식료품 | 7.0 | 5.0 | 4.2 | 3.9 |
| 섬유 및 가죽 제품 | 6.8 | 4.1 | 3.4 | 2.6 |
| 목재 및 종이 제품 | 1.6 | 1.5 | 1.2 | 1.1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7 | 0.9 | 0.7 | 0.8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1.3 | 0.9 | 0.7 | 0.8 |
| 기초소재 업종 | 17.1 | 17.4 | 17.1 | 16.6 |
| 석유 및 석탄 제품 | 2.1 | 2.2 | 3.8 | 3.0 |
| 화학제품 | 6.3 | 6.4 | 6.4 | 6.2 |
| 비금속 광물 제품 | 1.8 | 1.9 | 1.2 | 1.3 |
| 제1차 금속 제품 | 5.1 | 5.0 | 4.1 | 4.4 |
| 금속제품 | 1.7 | 1.9 | 1.5 | 1.6 |
| 조립가공 업종 | 15.0 | 17.7 | 19.2 | 18.8 |
| 일반기계 | 3.1 | 3.6 | 3.1 | 3.1 |
| 전기 및 전자 기기 | 6.4 | 7.9 | 10.2 | 9.2 |
| 정밀기기 | 0.4 | 0.5 | 0.5 | 0.5 |
| 수송장비 | 5.1 | 5.8 | 5.4 | 6.1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12.2 | 11.6 | 9.4 | 10.4 |
| 전력·가스·수도 | 1.7 | 1.8 | 2.3 | 2.3 |
| 건설 | 10.5 | 9.8 | 7.1 | 8.1 |
| 서비스 | 30.3 | 34.1 | 39.0 | 40.6 |
| 도소매 | 6.6 | 5.9 | 5.0 | 4.6 |
| 음식점 및 숙박 | 0.8 | 0.8 | 3.0 | 3.1 |
| 운수 및 보관 | 3.8 | 4.0 | 3.7 | 3.6 |
| 통신 및 방송 | 1.2 | 1.4 | 2.4 | 2.5 |
| 금융 및 보험 | 3.2 | 3.8 | 4.6 | 4.3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6.3 | 8.6 | 9.9 | 10.4 |
| 공공행정 및 국방 | 3.3 | 3.1 | 3.1 | 3.3 |
| 교육 및 보건 | 3.5 | 4.8 | 5.2 | 6.4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1.6 | 1.7 | 2.2 | 2.5 |
| 기타 | 2.3 | 2.5 | 2.2 | 2.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2. 부가가치 변화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1995년 이후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2003년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 확대와 반대로 농림수산업과 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2003년 28.8%로 약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개별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의 특징은 소비재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감소하고 조립가공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증가하는데 있다. 제조업 중 소비재업종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2003년 부가가치 비중이 6.6%이고 기초소재업종은 1990년 이후 약 1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조립가공업종은 1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표 2-3> 부가가치 창출 비중

(단위: %)

| 산 업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수산물 | 8.1 | 5.6 | 4.0 | 3.0 |
| 광산물 | 0.8 | 0.6 | 0.3 | 0.3 |
| 제조업 | 31.5 | 33.1 | 29.5 | 28.8 |
| 소비재업종 | 10.3 | 8.6 | 6.8 | 6.6 |
| 기초소재업종 | 10.4 | 11.5 | 10.7 | 10.3 |
| 조립가공업종 | 10.8 | 12.9 | 12.0 | 12.0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13.4 | 11.0 | 9.7 | 10.7 |
| 서비스 | 46.2 | 49.8 | 56.2 | 57.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부가가치율은 총생산액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2003년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 기준 44.1%로 1995년의 44.7%

에 비해 낮지만 2000년의 43.0%보다는 증가하였다.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율이 2003년 59.4%로 감소하여 1990년 66.1%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의 부가가치율은 45.3%로 지난 1995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에 62.0%로 하락한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율은 총투입액(즉, 총산출액) 중에서 원재료, 원료 등으로 투입된 중간재 비율(즉, 중간투입률)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율의 변화는 중간재 투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의 부가가치율 상승은 중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중간재 수입 증가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0년 일본의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52.2%로 2000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 43.0%보다 높다. 제조업만을 비교해 볼 때 2000년 일본의 부가가치율은 32.8%로 우리나라의 27.4%보다 높다. 특히 일본의 소비재업종과 기초소재업종의 부가가치율은 각각 38.1%와 33.7%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표 2-4> 부가가치율 구성

(단위: %)

|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어업 | 66.1 | 65.6 | 62.4 | 59.4 |
| 광업 | 67.4 | 68.5 | 63.4 | 64.8 |
| 제조업 | 27.2 | 31.0 | 27.4 | 28.5 |
| 소비재업종 | 25.6 | 30.8 | 28.6 | 31.6 |
| 기초소재업종 | 25.8 | 29.6 | 27.1 | 27.3 |
| 조립가공업종 | 30.7 | 32.5 | 26.9 | 28.1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46.9 | 42.4 | 44.4 | 45.3 |
| 서비스 | 65.7 | 65.2 | 62.0 | 62.0 |
| 전산업 | 42.8 | 44.7 | 43.0 | 44.1 |

<부표 2-5> 산업별 부가가치율 구성

(단위: %)

|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어업 | 66.1 | 65.6 | 62.4 | 59.4 |
| 광업 | 67.4 | 68.5 | 63.4 | 64.8 |
| 제조업 | 27.2 | 31.0 | 27.4 | 28.5 |
| 소비재업종 | 25.6 | 30.8 | 28.6 | 31.6 |
| 음식료품 | 24.4 | 28.6 | 27.0 | 31.1 |
| 섬유 및 가죽제품 | 24.0 | 30.2 | 29.7 | 31.7 |
| 목재 및 종이제품 | 25.8 | 29.4 | 26.6 | 28.8 |
| 인쇄, 출판 및 복제 | 37.3 | 40.9 | 31.2 | 35.6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33.7 | 37.3 | 34.0 | 33.6 |
| 기초소재업종 | 25.8 | 29.6 | 27.1 | 27.3 |
| 석유 및 석탄제품 | 16.5 | 35.7 | 32.8 | 35.0 |
| 화학제품 | 27.9 | 30.0 | 24.6 | 25.6 |
| 비금속광물제품 | 39.8 | 37.0 | 34.0 | 31.1 |
| 제1차금속제품 | 19.9 | 22.1 | 21.1 | 20.2 |
| 금속제품 | 32.1 | 33.1 | 34.5 | 36.1 |
| 조립가공업종 | 30.7 | 32.5 | 26.9 | 28.1 |
| 일반기계 | 33.9 | 34.1 | 30.7 | 30.7 |
| 전기 및 전자기기 | 27.7 | 33.6 | 27.3 | 28.2 |
| 정밀기기 | 31.2 | 32.9 | 25.7 | 30.0 |
| 수송장비 | 32.2 | 29.9 | 24.0 | 26.4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46.9 | 42.4 | 44.4 | 45.3 |
| 서비스 | 65.7 | 65.2 | 62.0 | 62.0 |
| 전산업 | 42.8 | 44.7 | 43.0 | 44.1 |

개별 산업별 부가가치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재업종의 부가가치율 증가가 눈에 띄고 조립가공업종도 부가가치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소비재업종 중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율은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소재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초소재업종 중 제1차 금속제품의 부가가치율은 199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추세에 있다. 반면 금속제품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다.

소비재업종의 부가가치율만이 부가가치율이 높았던 1995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은 1995년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수출입 변화

가. 수출 변화

2003년 총수출액은 272.8조원으로 2000년의 237.0조원에 비해 약 1.15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2000년의 경우 1995년(113.9조원)에 비해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상품을 크게 농림수산물, 광산물, 공산물, 그리고 서비스 등의 기타부분으로 구분할 때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84.7%로 가장 높다. 광산물과 농림수산물의 수출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산품의 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산물 수출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를 중심으로 한 조립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비중은 2003년 32.1%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재 제품과 기초소재 제품의 수출비중보다도 크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다음으로 수송장비 제품의 수출비중이 2003년 15.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제품들의 수출비중 증가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두드러져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제품이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제품의 수출비중은 10.0%로 1990년 31.4%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비중 축소에 기인한다. 섬유 및 가죽제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 25%에서 2003년 6.6%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1990년대의 섬유 및 가죽제품 중심의 수출에서 2000년 이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제품 중심의 수출로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부표 2-6> 수출비중 변화

(단위: %)

| 산 업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수산물 | 1.6 | 0.8 | 0.3 | 0.2 |
| 광산물 | 0.1 | 0.1 | 0.0 | 0.0 |
| 공산물 | 79.5 | 80.6 | 81.3 | 84.7 |
| 소비재제품 | 31.4 | 18.6 | 13.3 | 10.0 |
| 음식료품 | 2.2 | 1.6 | 1.3 | 1.3 |
| 섬유 및 가죽제품 | 25.0 | 14.3 | 9.7 | 6.6 |
| 목재 및 종이제품 | 0.8 | 0.8 | 0.9 | 0.8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1 | 0.1 | 0.1 | 0.1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3.3 | 1.7 | 1.3 | 1.2 |
| 기초소재제품 | 17.7 | 18.3 | 19.5 | 21.0 |
| 석유 및 석탄제품 | 1.6 | 2.1 | 5.1 | 3.7 |
| 화학제품 | 6.7 | 8.9 | 8.4 | 10.0 |
| 비금속광물제품 | 0.8 | 0.4 | 0.4 | 0.4 |
| 제1차 금속제품 | 5.4 | 4.8 | 4.2 | 5.3 |
| 금속제품 | 3.3 | 2.2 | 1.3 | 1.5 |
| 조립가공제품 | 30.4 | 43.6 | 48.5 | 53.7 |
| 일반기계 | 5.8 | 4.0 | 4.1 | 4.9 |
| 전기 및 전자기기 | 17.5 | 27.6 | 30.5 | 32.1 |
| 정밀기기 | 1.1 | 1.0 | 0.9 | 1.1 |
| 수송장비 | 6.0 | 11.0 | 13.0 | 15.5 |
| 기타 | 18.8 | 18.6 | 18.3 | 15.1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나. 수입 변화

2003년 총수입액은 228.3조원으로 2000년의 240.0조원과 큰 변화가 없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액의 변화도 국내 총산출액의 변화에 비해 미미하다.

<부표 2-7> 수입비중 변화

(단위: %)

| 산 업 | 1990 | 1995 | 2000 | 2003 |
|--------------|-------|-------|-------|-------|
| 농림수산물 | 5.7 | 4.3 | 2.3 | 2.6 |
| 광산물 | 12.4 | 10.1 | 16.7 | 15.5 |
| 공산물 | 74.8 | 75.3 | 67.1 | 68.1 |
| 소비재 제품 | 13.0 | 13.0 | 10.0 | 10.9 |
| 음식료품 | 4.7 | 4.1 | 3.7 | 4.2 |
| 섬유 및 가죽제품 | 4.5 | 4.7 | 3.3 | 3.8 |
| 목재 및 종이제품 | 2.7 | 2.8 | 1.7 | 1.6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2 | 0.3 | 0.3 | 0.3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0.8 | 1.1 | 0.9 | 1.1 |
| 기초소재제품 | 27.4 | 24.5 | 20.4 | 24.4 |
| 석유 및 석탄제품 | 4.4 | 4.2 | 4.6 | 5.2 |
| 화학제품 | 12.2 | 9.7 | 8.0 | 9.4 |
| 비금속광물제품 | 1.3 | 1.0 | 0.7 | 1.1 |
| 제1차 금속제품 | 8.5 | 8.6 | 6.3 | 7.9 |
| 금속제품 | 1.0 | 0.9 | 0.7 | 0.8 |
| 조립가공제품 | 34.5 | 37.8 | 36.7 | 32.8 |
| 일반기계 | 13.9 | 14.4 | 8.1 | 7.2 |
| 전기 및 전자기기 | 13.4 | 13.8 | 21.5 | 19.4 |
| 정밀기기 | 3.3 | 4.6 | 3.8 | 3.5 |
| 수송장비 | 3.9 | 4.9 | 3.3 | 2.8 |
| 기타 | 7.1 | 10.2 | 13.9 | 13.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상품을 크게 농림수산물, 광산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등 기타부분으로 구분할 때 공산품의 수입비중이 6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광산물 15.5%,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제품 13.8%, 농림수산물 2.6%의 순서이다. 공산품의 수입비중은 1990년대 75% 수준에서 2000년 이후 67~6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입비중 변화에는 광산물과 서비스 제품의 수입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광산품은 원유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그 수입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산품 중에서 수입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조립가공제품이며, 이 중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약 5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비중 추이 변화를 보면, 2003년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수입비중은 하락한 반면 기초소재제품의 수입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의 수입비중 증가가 이를 이끌었다. 이들 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도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측된다.

3. 수입의존도 변화

본 연구에서 수입의존도는 총 투입액 중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²⁸⁾.

$$\text{수입의존도} = \frac{\text{중간재 수입액}}{\text{총 투입액}} \times 100$$

28) 따라서 수입의존도를 수입중간투입계수 또는 수입중간투입비중이라고도 한다. 수입의존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2003년 수입의존도를 보면 전 산업 평균이 12.0%로 2000년(13.1%)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의 약 10% 수준에 비해서는 상승하였다.

한편 2003년 산업별 수입의존도를 보면, 제조업이 2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7.8%, 서비스업 4.3%, 농림어업 3.1%, 그리고 광업 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대 18%에서 2000년 이후 20%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수입의존도가 한 단계 상승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조립가공업종의 수입의존도가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업종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대 약 23% 수준에서 2000년대 약 32%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결과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수출 지향적 무역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최종재와 중간재 등 수입재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되었고 관세환급제도나 감면제도도 적극 활용되었다. 그 결과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관련 산업의 발달이 늦어지고 이들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표 2-8> 산업별 수입의존도 변화

(단위: %)

|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3년 |
|---------------|-------|-------|-------|-------|
| 농림어업 | 2.1 | 2.4 | 2.5 | 3.1 |
| 광업 | 0.6 | 0.8 | 0.8 | 1.1 |
| 제조업 | 18.0 | 18.0 | 21.8 | 20.5 |
| 소비재 업종 | 13.7 | 14.7 | 12.8 | 12.9 |
| 음식료품 | 8.7 | 10.4 | 9.6 | 10.6 |
| 섬유 및 가죽 제품 | 16.9 | 18.7 | 15.2 | 16.3 |
| 목재 및 종이 제품 | 27.6 | 24.6 | 21.9 | 19.7 |
| 인쇄, 출판 및 복제 | 4.6 | 4.8 | 3.9 | 4.1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11.5 | 13.6 | 13.6 | 12.7 |
| 기초소재 업종 | 23.1 | 20.9 | 26.4 | 23.6 |
| 석유 및 석탄 제품 | 64.3 | 53.1 | 58.6 | 56.1 |
| 화학제품 | 20.6 | 19.5 | 19.3 | 19.2 |
| 비금속 광물 제품 | 8.7 | 7.0 | 6.9 | 7.5 |
| 제1차 금속 제품 | 18.8 | 18.9 | 19.7 | 18.7 |
| 금속제품 | 10.3 | 7.7 | 8.9 | 7.6 |
| 조립가공 업종 | 18.0 | 17.5 | 23.1 | 21.4 |
| 일반기계 | 13.9 | 13.6 | 11.7 | 10.8 |
| 전기 및 전자 기기 | 23.8 | 23.3 | 32.4 | 31.8 |
| 정밀기기 | 18.7 | 11.4 | 17.5 | 20.7 |
| 수송장비 | 10.4 | 12.6 | 10.8 | 11.1 |
|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4.7 | 4.7 | 7.8 | 7.8 |
| 전력·가스·수도 | 14.4 | 14.2 | 22.7 | 22.7 |
| 건설 | 3.1 | 3.0 | 3.1 | 3.5 |
| 서비스 | 3.8 | 3.8 | 4.8 | 4.3 |
| 도소매 | 2.0 | 1.4 | 3.8 | 3.3 |
| 음식점 및 숙박 | 2.5 | 2.4 | 6.0 | 6.5 |
| 운수 및 보관 | 13.6 | 17.9 | 25.0 | 20.0 |
| 통신 및 방송 | 4.3 | 3.7 | 4.3 | 4.2 |
| 금융 및 보험 | 0.9 | 1.0 | 1.6 | 1.6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7 | 0.4 | 0.8 | 1.6 |
| 공공행정 및 국방 | 8.7 | 6.5 | 4.6 | 2.9 |
| 교육 및 보건 | 1.3 | 2.0 | 2.5 | 2.6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2.0 | 2.3 | 2.1 | 2.2 |
| 전 산업 | 10.8 | 10.9 | 13.1 | 12.0 |

부 록 3 : 일반균형모형의 구조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CGE 모형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 제시한 모형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된 모형의 구조의 설명은 정재호·성명재·이명현(2003)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1. 경제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가. 기업

28개 부문 각각에 1개의 대표적 기업을 상정한다. 이 기업은 자신의 부문과 다른 부문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여 중간투입으로 사용하고, 가계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중간투입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생산에 판매되는 내수재와 해외시장에 판매되는 수출재를 만들어 낸다. 물론 노동, 자본, 중간투입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 자본임대료, 투입재 가격을 지불한다. 또한 기업은 내수재 판매액 중 일정비율을 간접세로 정부에 납부한다. 이 비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부문 s 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기업은 이를 최대화하려 한다.

$$\pi_s = (1 - t_{s,d})p_{s,d}y_{s,d} + p_{s,x}y_{s,x} - [(\sum_i p_i^Q Q_{is}) + wL_s + rK_s],$$

$$s = 1, \dots, 28$$

여기서 π_s : s 부문의 대표적 기업의 이윤

t_s^d : 내수재에 부과되는 간접세율

- $p_{s,d}$: 내수재 가격
 $y_{s,d}$: 내수재 공급량
 $p_{s,x}$: 수출재 가격
 $y_{s,x}$: 수출재 공급량
 p_i^Q : 중간투입재 가격
 Q_{is} : i 재화에 대한 s 부분의 중간투입수요량
 w : 임금
 L_s : 노동수요량
 r : 자본임대료
 K_s : 자본수요량

이 기업의 생산기술은 다투입-다산출(multi-input, multi-output)이며 다음과 같이 투입·산출이 분리가능한 기술로 표현된다.

$$y_s = \min \left[\frac{Q_{1s}}{a_{1s}}, \dots, \frac{Q_{ns}}{a_{ns}}, \frac{V^s(L_s, K_s)}{a_{vs}} \right], \quad (1)$$

$$V^s(L_s, K_s) = A_s [a_s L_s^{\nu_s^V} + (1-a_s) K_s^{\nu_s^V}]^{1/\nu_s^V}, \quad \text{단 } \nu_s^V < 1 \quad (2)$$

$$y_s = B_s [b_s y_{s,d}^{\nu_s^T} + (1-b_s) y_{s,x}^{\nu_s^T}]^{1/\nu_s^T}, \quad \text{단 } \nu_s^T > 1 \quad (3)$$

여기서 y_s : s 부분의 산출수준

a_{is} : s 부분 산출(y_s) 1단위 생산에 필요한 i 재 중간 투입량

V_s : s 부분 부가가치량

a_{vs} : s 부분 산출(y_s)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부가가치량

즉, 부문은 식 (1)이 보여주듯 투입재와 부가가치부분을 레온티

에프 생산함수에 의해 결합하며, 부가가치 부분은 식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과 자본 간의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함수로 주어진다. 이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 σ_s^V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gma_s^V = 1/(1 - \nu_s^Q)$$

한편 이렇게 생산된 산출물은 식 (3)에 나타난 불변변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에 의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전환된다. 이 때 내수재와 수출재 사이의 변환탄력성 σ_s^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igma_s^T = 1/(\nu_s^T - 1)$$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에 주어진 이윤극대화 문제의 풀이로서 $(y_{s,d}, y_{s,m}, Q_{is}, L_s, K_s)$ 의 벡터, 즉 내수재와 수출재의 공급량, 중간투입수요량,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수요량이 결정된다.

나. 가계

가계는 다음과 같이 가치분 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면서 소비로부터의 효용을 최대화하려 한다.

$$U = \prod_i (c_i - \gamma_i)^{\beta_i}, \quad \sum_i \beta_i = 1$$

여기서 U : 효용지표

c_i : i 재화의 소비량

한편, 가계가 직면한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1-\alpha)Y^* = \left(\sum_i p_i^C c_i\right)$$

여기서 Y^* : 가계의 가처분소득

p_i^C : 소비재 i 의 가격

위에서 보듯이 가계의 저축행태와 관련해서는 시간에 걸친 효용 최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계별로 일정한 저축성향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저축과 관련하여 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별도의 다른 모수에 대한 추정 없이 기준연도의 자료로부터 쉽게 저축성향을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정확적 일반균형 모형에서 가계의 저축행태를 묘사하는 가정으로 흔히 사용된다²⁹⁾.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의 효용함수는 Stone-Geary 함수로 표현된다. 여기서 γ_i 는 선형지출체계에서 재화별 최소소요량 (minimum requirement)으로 해석된다.

가계가 자신의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Y^*)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wL + r(1 - t_r - d_K)K] - TI + TR$$

여기서 L : 노동부존

K : 자본부존

t : 법인세율

d : 감가상각률

TI : 소득세(사회보장부담금 포함)

TR :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이전지출

29) 예컨대, 신동천(1999), Decaluwe · Patry · Savard and Thorbecke(1999), Wobst(1999)

즉, 가계는 소유한 노동력과 자본의 요소를 판매 및 임대하여 요소소득을 얻는다. 이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법인세가 징수된다. 또한 자본에 대한 임대료 수입 중 일부분이 감가상각 자금으로 지출된다. 그리고 정부에게 소득세 (TI)를 징수당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로부터 이전지출(TR)을 받는다.

소득세와 이전지출은 각각 일정한 단위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액수로 정의된다.

$$TI = p_c U_{ti}^0$$

$$TR = p_c U_{tr}^0$$

이 때 p_c 는 한 단위의 효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액이다.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의 효용최대화 문제에 대한 해로써 소비재에 대한 수요 $c_{i,h}$ 가 결정된다.

다. 정부

정부는 생산부분의 내수재 판매에 대해 간접세를, 자본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가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물품세를 징수하고 이를 이전지출, 소비적 지출 그리고 정부저축으로 돌린다. 따라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begin{aligned} & \sum_i t_{i,d} p_{i,d} y_{i,d} + r t_r K + TI + \sum_i (t_{i,m} + (1 + t_{i,m}) t_{i,z}) p_{i,m}^0 y_{i,m} \\ & = TR + \sum_i p_i^C c_{i,G} + p_{inv} gs \end{aligned}$$

여기서 $t_{i,m}$: i 재화에 대한 관세율

$t_{i,z}$: i 재화에 대한 수입상품세율

$p_{i,m}^0$: i 재화 수입재 세전가격

$y_{i,m}$: i 재화 수입재 수입량

$c_{i,G}$: i 재화 정부소비량

gs : 실물정부투자량

이때 식의 좌변, 즉 재정수입은 세율이 정해지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생적으로 정해진다. 반면, 이렇게 정해진 재정수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실질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다 엄밀하게는 재화소비에 의한 효용이 외생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액수로 정해진다. 이 가정은 정부가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통해 가계의 소비수준에 대하여 어떤 최소수준만큼의 증가를 보장해주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는 실물로 일정한 양의 투자를 행한다.

셋째, 정부는 이와 같이 이전지출과 투자에 대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후에 남은 재원을 소비적 지출 각 항목에 지출하며 이때 각 항목별 지출액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컵-더글러스적 효용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지출을 행한다.

라. 투자재 시장

투자재원인 총저축액은 다음과 같이 요소시장에서 유보되는 감가상각, 가계의 저축, 정부의 저축(GS), 해외저축(FS)의 합으로 정해진다.

$$TS = r d_K K + \alpha Y^* + GS + eFS$$

여기서 TS : 총저축액

FS :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해외저축규모(외환표시)

e : 환율

$$GS = p_{inv}gs$$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투자함수를 상정하지 않고 총투자액이 자동적으로 총저축액과 일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신고전학파적 일반균형모형에서 일반적이다³⁰⁾.

그리고 투자재(I) 1단위는 투자용 재화(I_1, \dots, I_n)들을 일정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투자재의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은 레온티에프 함수라고 가정한다.

$$I = \min\left[\frac{I_1}{k_1}, \dots, \frac{I_n}{k_n}\right]$$

여기서 I_s : 재화 s 의 투자용 수요

k_s : 투자재 1단위 형성을 위해 필요한 s 재화의 양

30) 독립적 투자함수를 신고전파적 일반균형모형에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동천(1999) p. 136 이하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투자재 1단위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I = \sum_i p_i^I k_i$$

여기서 p^I : 투자재의 가격

p_i^I : I_s 의 가격

그러므로 투자총량과 각 재화별 투자용 수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 = TS/p^I$$

$$I_s = k_s I$$

마. 해외부분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출재를 구입함으로써 외환을 공급하고, 국내시장에 수입재를 판매함으로써 외환을 수요한다. 총수입액과 총수출액의 차이는 국내시장으로의 유입자본이 됨으로써 외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균형이 성립한다.

$$p_{s,x}^W y_{s,x} + FS = p_{s,m}^W y_{s,m}$$

여기서 $p_{s,x}^W$: 수출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표시)

$p_{s,m}^W$: 수입재의 세계시장가격(외환표시)

국내화폐 표시 수출재 및 수입재의 가격은 외환으로 표시한 가격에 환율을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또한, FS 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바. 아밍턴 가정

앞에서 중간투입으로 사용되는 Q_i , 가계와 정부의 소비재로 사용되는 c_i , 투자재로 사용되는 I_i 는 각기 하나의 재화인 것처럼 서술되었으나, 사실은 국산재와 수입재가 다음과 같이 결합한 것으로 가정한다. 예컨대 소비재 c_i 의 1단위는 다음과 같은 불변대체 탄력성 함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c_i = A_i^C [a_i^C c_{i,d}^{\nu_i^C} + (1 - a_i^C) c_{i,m}^{\nu_i^C}]^{1/\nu_i^C}, \quad \text{단 } \nu_i^C < 1$$

이때 $\sigma_{dm,i}^C = 1/(1 - \nu_i^C)$ 로 주어지는 $\sigma_{dm,i}^C$ 가 국산재와 수입재 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중간투입재(Q_{ij})와 투자재(I_i)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sigma_{dm,i}^Q$, $\sigma_{dm,i}^I$ 가 정의된다.

따라서 예컨대 앞의 설명에서 제시된 가격 p_i^C 는 산업부문별로 국산재 가격 $p_{i,d}$ 와 수입재 가격 $p_{i,m}$ 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지출최소화 문제의 간접목적함수로 주어진다. 또한 p_i^Q 와 p_i^I 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다.

$$p_i^C = \text{Min}_{c_{i,d}, c_{i,m}} (p_{i,d} c_{i,d} + p_{i,m} c_{i,m})$$

$$\text{s.t. } 1 = c_i$$

여기서 $p_{i,d}$: 국산재 가격

$p_{i,m}$: 수입재 가격

그러므로 s부문의 국산재에 대한 소비재로서의 수요($c_{i,d}$)와 그

와 같은 부문의 수입재에 대한 소비재로서의 수요($c_{i,m}$)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c_{i,k} = c_i \frac{\partial p_i^C}{\partial p_{i,k}}, k = d, m$$

또한 국산재 및 수입재에 대한 중간투입으로서의 수요 ($Q_{ij,d}, Q_{ij,m}$)와 투자재로서의 수요($I_{i,d}, I_{i,m}$)도 같은 요령으로 Q_{ij} 및 I_i 와 지출함수 p_i^Q 와 p_i^I 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2. 시장의 균형조건

일반균형은 다음과 같이 재화시장, 요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된다.

$$\sum_j Q_{sj,d} + c_{s,d} + c_{s,d}^G + I_{s,d} = y_{s,d}$$

$$\sum_i L_i = L$$

$$\sum_i K_i = K$$

$$\sum_s p_{s,x}^W y_{s,x} + FS = \sum_s p_{s,m}^W (\sum_j Q_{sj,m} + c_{s,m} + c_{s,m}^G + I_{s,m})$$

여기서 $c_{s,d}^h$: 가계의 국내재 s에 대한 소비수요

$c_{s,d}^G$: 정부의 국내재 s에 대한 소비수요

$c_{s,m}^h$: 가계의 수입재 s에 대한 소비수요

$c_{s,m}^G$: 정부의 수입재 s에 대한 소비수요

부 록 4 : 일반균형모형 관련 부표들

<부표 4-1> 간접세액과 세율

(단위: 조원, %)

| | 내수총생산액 | 간접세액 | 간접세율 |
|--------------|--------|-------|------|
| 농림수산물 | 38.70 | 0.54 | 1.4 |
| 광산물 | 3.33 | -0.11 | -3.4 |
| 음식료품 | 64.81 | 9.66 | 14.9 |
| 섬유 및 가죽제품 | 27.02 | 1.95 | 7.2 |
| 목재 및 종이제품 | 16.35 | 0.45 | 2.7 |
| 인쇄, 출판 및 복제 | 13.71 | 0.45 | 3.3 |
| 석유 및 석탄제품 | 41.99 | 13.75 | 32.7 |
| 화학제품 | 80.98 | 2.21 | 2.7 |
| 비금속광물제품 | 22.21 | 0.65 | 2.9 |
| 제1차금속제품 | 61.96 | 0.35 | 0.6 |
| 금속제품 | 24.61 | 0.50 | 2.0 |
| 일반기계 | 40.66 | 1.32 | 3.2 |
| 전기 및 전자기기 | 71.93 | 3.20 | 4.5 |
| 정밀기기 | 5.16 | 0.28 | 5.5 |
| 수송장비 | 63.30 | 4.87 | 7.7 |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 10.06 | 0.67 | 6.6 |
| 전력, 가스 및 수도 | 40.37 | 1.38 | 3.4 |
| 건설 | 140.76 | 5.84 | 4.1 |
| 도소매 | 71.82 | 0.35 | 0.5 |
| 음식점 및 숙박 | 50.57 | 5.53 | 10.9 |
| 운수 및 보관 | 44.01 | -0.03 | -0.1 |
| 통신 및 방송 | 42.57 | 0.47 | 1.1 |
| 금융 및 보험 | 72.84 | 2.47 | 3.4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74.85 | 15.67 | 9.0 |
| 공공행정 및 국방 | 57.59 | 0.00 | 0.0 |
| 교육 및 보건 | 110.89 | 0.33 | 0.3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41.77 | 5.29 | 12.7 |
| 기타 | 34.03 | 0.00 | 0.0 |

<부표 4-2> 관세 및 수입상품 세액과 세율

(단위: 조원, %)

| | 수입액 | 관세수입 | 수입상품세 수입 | 관세율 | 수입상품 세율 |
|-------------|-------|------|-------------|------|------------|
| 농림수산물 | 6.35 | 0.55 | 0.01 | 8.6 | 0.1 |
| 광산물 | 40.02 | 0.68 | 0.96 | 1.7 | 2.3 |
| 음식료품 | 8.92 | 1.33 | 0.98 | 14.9 | 9.6 |
| 섬유 및 가죽제품 | 9.25 | 0.58 | 0.42 | 6.2 | 4.3 |
| 목재 및 종이제품 | 4.01 | 0.13 | 0.04 | 3.2 | 1.0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68 | 0.00 | 0.01 | 0.6 | 1.7 |
| 석유 및 석탄제품 | 11.78 | 0.18 | 1.87 | 1.5 | 15.6 |
| 화학제품 | 23.90 | 0.96 | 0.29 | 4.0 | 1.2 |
| 비금속광물제품 | 2.83 | 0.15 | 0.04 | 5.4 | 1.4 |
| 제1차금속제품 | 20.93 | 0.31 | 0.04 | 1.5 | 0.2 |
| 금속제품 | 2.04 | 0.09 | 0.04 | 4.4 | 2.1 |
| 일반기계 | 18.39 | 0.73 | 0.16 | 3.9 | 0.8 |
| 전기 및 전자기기 | 50.92 | 0.53 | 0.53 | 1.0 | 1.0 |
| 정밀기기 | 8.78 | 0.28 | 0.33 | 3.2 | 3.6 |
| 수송장비 | 6.88 | 0.23 | 0.31 | 3.3 | 4.4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2.45 | 0.14 | 0.27 | 5.5 | 10.2 |
| 전력, 가스 및 수도 | 0.11 | 0.00 | 0.00 | 0.0 | 0.0 |
| 건설 | 0.02 | 0.00 | 0.00 | 0.0 | 0.0 |
| 도소매 | 1.35 | 0.00 | 0.00 | 0.0 | 0.0 |
| 음식점 및 숙박 | 5.62 | 0.00 | 0.00 | 0.0 | 0.0 |
| 운수 및 보관 | 7.13 | 0.00 | 0.00 | 0.0 | 0.0 |
| 통신 및 방송 | 1.16 | 0.00 | 0.00 | 0.0 | 0.0 |
| 금융 및 보험 | 1.76 | 0.00 | 0.00 | 0.0 | 0.0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3.99 | 0.00 | 0.00 | 0.0 | 0.0 |
| 공공행정 및 국방 | 0.32 | 0.00 | 0.00 | 0.0 | 0.0 |
| 교육 및 보건 | 1.53 | 0.00 | 0.00 | 0.0 | 0.0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1.93 | 0.01 | 0.00 | 0.3 | 0.2 |
| 기타 | 2.08 | 0.00 | 0.00 | 0.0 | 0.1 |

<부표 4-3> 가계소비, 정부소비 및 투자액 및 비중

(단위: 조원, %)

| | 가계소비 | | 정부소비 | | 투자 | |
|-------------|--------|-------|-------|-------|--------|-------|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농림수산물 | 14.12 | 3.1 | 0.00 | 0.0 | 0.44 | 0.2 |
| 광산품 | 0.01 | 0.0 | 0.00 | 0.0 | 0.82 | 0.4 |
| 음식료품 | 42.90 | 9.6 | 0.00 | 0.0 | 0.54 | 0.2 |
| 섬유 및 가죽제품 | 15.91 | 3.5 | 0.00 | 0.0 | 0.95 | 0.4 |
| 목재 및 종이제품 | 0.58 | 0.1 | 0.00 | 0.0 | -0.24 | -0.1 |
| 인쇄, 출판 및 복제 | 3.30 | 0.7 | 0.00 | 0.0 | 0.09 | 0.0 |
| 석유 및 석탄제품 | 12.08 | 2.7 | 0.00 | 0.0 | -0.26 | -0.1 |
| 화학제품 | 6.48 | 1.4 | 0.00 | 0.0 | -0.10 | 0.0 |
| 비금속광물제품 | 0.38 | 0.1 | 0.00 | 0.0 | 0.12 | 0.1 |
| 제1차 금속제품 | 0.02 | 0.0 | 0.00 | 0.0 | -1.38 | -0.6 |
| 금속제품 | 1.19 | 0.3 | 0.00 | 0.0 | 0.50 | 0.2 |
| 일반기계 | 1.63 | 0.4 | 0.00 | 0.0 | 24.94 | 10.8 |
| 전기 및 전자기기 | 18.55 | 4.1 | 0.00 | 0.0 | 16.97 | 7.3 |
| 정밀기기 | 1.64 | 0.4 | 0.00 | 0.0 | 6.31 | 2.7 |
| 수송장비 | 12.81 | 2.9 | 0.00 | 0.0 | 19.24 | 8.3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5.22 | 1.2 | 0.00 | 0.0 | 2.13 | 0.9 |
| 전력, 가스 및 수도 | 11.64 | 2.6 | 0.00 | 0.0 | 0.00 | 0.0 |
| 건설 | 0.00 | 0.0 | 0.00 | 0.0 | 129.37 | 55.8 |
| 도소매 | 34.92 | 7.8 | 0.00 | 0.0 | 6.69 | 2.9 |
| 음식점 및 숙박 | 35.24 | 7.8 | 0.00 | 0.0 | 0.00 | 0.0 |
| 운수 및 보관 | 16.82 | 3.7 | 0.00 | 0.0 | 0.30 | 0.1 |
| 통신 및 방송 | 19.09 | 4.3 | 0.00 | 0.0 | 0.00 | 0.0 |
| 금융 및 보험 | 29.00 | 6.5 | 0.00 | 0.0 | 0.00 | 0.0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62.21 | 13.9 | 0.00 | 0.0 | 24.36 | 10.5 |
| 공공행정 및 국방 | 0.41 | 0.1 | 56.79 | 68.9 | 0.00 | 0.0 |
| 교육 및 보건 | 66.76 | 14.9 | 24.81 | 30.1 | 0.00 | 0.0 |
| 사회 및 기타서비스 | 36.27 | 8.1 | 0.86 | 1.0 | 0.00 | 0.0 |
| 기타 | -0.22 | 0.0 | 0.00 | 0.0 | 0.00 | 0.0 |
| 합계 | 448.96 | 100.0 | 82.46 | 100.0 | 231.78 | 100.0 |

<부표 4-4> 산업별 용도별 지출비중

(단위: %)

| | 중간투입비중 | 소비비중 | 투자비중 |
|-------------|--------|------|------|
| 농림수산물 | 68.1 | 31.0 | 1.0 |
| 광산물 | 98.2 | 0.0 | 1.8 |
| 음식료품 | 42.9 | 56.4 | 0.7 |
| 섬유 및 가죽제품 | 54.8 | 42.7 | 2.5 |
| 목재 및 종이제품 | 98.4 | 2.8 | -1.2 |
| 인쇄, 출판 및 복제 | 76.5 | 22.9 | 0.6 |
| 석유 및 석탄제품 | 78.8 | 21.6 | -0.5 |
| 화학제품 | 94.0 | 6.1 | -0.1 |
| 비금속광물제품 | 98.0 | 1.5 | 0.5 |
| 제1차 금속제품 | 101.6 | 0.0 | -1.7 |
| 금속제품 | 93.7 | 4.5 | 1.9 |
| 일반기계 | 55.7 | 2.7 | 41.6 |
| 전기 및 전자기기 | 71.3 | 15.0 | 13.7 |
| 정밀기기 | 45.4 | 11.2 | 43.4 |
| 수송장비 | 54.7 | 18.1 | 27.2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43.1 | 40.4 | 16.5 |

<국문초록>

관세율 체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반균형계산(CGЕ)모형 이용

정재호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곧 이은 전쟁으로 관세정책은 재정 수입 확보에 우선권을 두고 실행되었으며, 전후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산업 지향적 관세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중심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는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DDA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는 지금보다 낮아진 관세율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율 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관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관세율 수준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균등관세율 구조로의 전환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계산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모형)을 이용하

였다.

연구 결과 가계의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차등관세율 구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가계의 후생 증가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할 경우 후생 증대는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관세율 체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재배분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적관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체 산업에 새로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계의 후생변화는 기존 관세율을 일정률로 인하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은 단일관세율 혹은 균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개별 산업의 관세율의 인상 혹은 인하를 통한 혼란 등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관세율 인하가 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Abstract>

Analysis of Korean Tariff Structure within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Jaeho Cheung

Since 1984, Korea maintains 8% tariff rate on most of its final output.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maintains current tariff structure now and after conclusion of DDA negotiation, even if the rates of tariff are lowered after conclusion of DDA negotiation.

Using CGE model, this study calculates the optimal tariff structures that maximizes the representative consumer's utility under some political constraints. The result of calculation shows that the tariff structure should be significantly changed if Korean government accepts the theoretically optimal tariff structures. However, the gain from such optimization is almost negligible from the practical view. Also, when Korea adopts a uniform tariff rate system, the gain from the uniform tariff rate system is negligible.

It implies that an attempt for major changes in the current tariff structure brings on small welfare gains which could not cover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sts.

<著者略歷>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E) 모형 이용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정재호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20-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